

제6장 파주의 인물

1. 청백리, 충신

·황희



에 노력하였고, 법전을 정비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하는 등, 조선 왕조의 명재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문종 2년(1452) 세종의 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익성공(翼成公)이다.

방촌 황희(彪村 黃喜, 1363~1532)는 고려 우왕 2년(1376)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공양왕 1년(1389) 문과에 급제하였다. 태조 1년(1392)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으나, 태조 3년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에 의해 조선 조정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세종 13년(1431) 영의정이 되어 18년간 세종과 함께 국정을 다스려 각종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공로를 세웠다. 특히 농사법의 개량

□ 교하로 돌아가는 황희

<태종 18년(1418) 5월 11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황희(黃喜)에게 명하여 전리(田里)로 물러가게 하였다. 김상녕(金尙寧)이 황희를 입궐시키니, 대언(代言) 등에게 명하여 황희에게 물었다.

“옛날에 내가 김한로(金漢老)의 계문(啓聞)으로 인하여, 구종수(具宗秀)가 담을 넘어 세자전(世子殿)에 들어가서 기이한 잡기(雜技)와 음흉한 계교(計巧)로써 세자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여 국본(國本)을 그르치게 하였음을 알았으나, 내가 종사(宗社)가 중하므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혼자 알고 있었다면 방(房)에 두고 매를 때려서라도 오히려 제어(制御)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미 대신(大臣)에게 알려져서 이미 계문을 행하였으니, 비록 이를 덮어두려고 하더라도 그리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이원(李原)과 경(卿)을 불러서 들은 바를 갖추 설명하게 하였더니, 이원이 말하기를, ‘의당 국문하여야 마땅합니다’고 하였으나, 경은 손으로써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하기를, ‘구종수의 한 짓은 매와 개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세자의 잘못이라면 나이가 어린 탓입니다’고 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 두 번이었다. 세자를 감싸주어 말하기를 꺼리고 사연(辭緣)이 공정(公正)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으니, 그것은 필시 지신사(知申事)였을 때 민씨(閔氏)와 원수가 되었으므로,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계책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공신(功臣)이 비록 많지만 어찌 사람마다 정사를 의논할 수 있겠으며, 비록 공신이 아니더라도 승선(承宣) 출신인 자는 보기를 공신과 같이 한다. 경 같은 자는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나는 항상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고 생각하였더니, 그 물음에 대답한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때 마음이 아파서 듣고서 눈물을 흘렸는데, 경은 그것을 잊었는가?”

황희가 말하였다. “그때 신이 대답하기를, ‘세자의 나이가 어린 소치(所致)입니다’고 하였는데, 이제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출출 눈물이 납니다. 신의 마음으로는 세자를 위하여 감개(感慨)하여 그리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억할 수 있으나, 그 때와 개의 일은 신은 능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신은 포의(布衣)에서,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무슨 마음으로 전하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대언 등이 이를 듣고 자세히 아뢰었다. 왕이 황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인군(人君)이 된 자는 신하와 더불어 변명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내가 이원으로 증인을 삼겠다. 경은 어찌하여 숨기는가? 잘못은 경에게 있으니, 마땅히 국문하여야 하나, 나는 인정을 끊어버릴 수가 없으므로 불러서 묻는 것이다. 당초에 경의 말을 들은 뒤에 전(殿)에 앉아서 정사를 볼 때 경이 서쪽에 있었는데, 내가 경에게 눈짓하여 말하기를, ‘지금의 인심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따르는데, 늙은 자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경은 그때 반쯤 몸을 굽혀 얼굴을 숙이고 바깥을 향하여 이를 들었다. 내가 그날의 말을 너를 위하여 발설하는 것이다. 옛날 어떤 대신(大臣)이 너를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였다. 네가 이조판서를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공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로 나간 것은 너의 간사함을 미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임기가 차자 형조판서에 임명하였으나, 육조는 조계(朝啓)의 임무가 있으므로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여 판한성부사에 임명한 것을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는가? 너의 죄를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야 하나, 내가 오히려 차마 시행하지 못하여 논죄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전리로 물러가 살되, 임의대로 거주하여 종신토록 어미를 봉양하도록 하라.” 황희가 곧 교하로 돌아갔다.

□ 황희를 교하에서 남원부로 옮겨 안치시키다

<태종 18년(1418) 5월 28일> 황희를 남원부(南原府)에 옮겨 안치(安置)하였다. 형조와 대간(臺諫)에서 상소하기를, “황희가 성상의 은혜를 받아 지위가 재보(宰輔)에 이르렀으나,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에 만의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여야 마땅합니다. 난적(亂賊) 구종수는 대저 사람들이 함께 주멸(誅滅)하여야 할 바인데, 황희는 이에 가볍게 논하여 상달(上達)하였고, 또 주상이 친문(親問)할 때를 당하여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충직한 마음이 없는 것을 결단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가 특별히 차마 죄 주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만 직첩(職牒)만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드니, 그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하는 의리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전하는 황희의 불충(不忠)하고 곧지 못한 죄를 법으로 처리하소서”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이어서 사헌감찰(司憲監察)이자 황희 누이의 아들인 오치선(吳致善)을 보내어 황희에게 선지(宣旨)하기를, “나는 네가 전일에 근신(近臣)이므로 친애(親愛)하던 정을 써서 가까운 땅 교하에 내쳐서 안치하였는데, 이제 대간에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남원(南原)에 옮긴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강제로 묶어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노모를 거느리고 스스로 돌아가라” 하였다.

□ 황희 등 고급 인물을 평가하게 하는 세종

<세종 13년(1431) 9월 8일> 임금이 안승선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황희가 교하수령 박도(朴道)에게 토지를 청하고, 도의 아들을 행수(行首)로 들여 붙였으며, 또 태석균(太石鈞)의 고신에 서경하기를 청하였으니 진실로 의롭지 못하였으매 간월이 청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이미 의정대신(議政大臣)이며, 또 태종께서 신임하시던 신하인데, 어찌 이런

일로써 영영 끊으리오. 임인년에 태종께서 소환하시던 날에 내게 이르시기를, ‘양녕이 세자로 있을 적에, 구종수의 무리들이 의탁하고 아부하며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여, 양녕으로 하여금 길을 그릇 들게 하였다’ 하시고, 희에게 의논하며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물었더니, 희가 아뢰기를, ‘세자께서 연세가 적어서 매나 개를 가지고 노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므로, 당시에 말들하기를, ‘희는 중립(中立)하여 일이 되어 가는 꼴을 보고만 있다’고 하여 밖에 내쳤는데, 이제 생각하면 희는 실로 죄가 없었다. 태종께서 또 한원제(漢元帝) 때의 사단(史丹)의 사실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고 인하여 눈물을 흘려 우셨으니, 그 희의 재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를 지극히 하셨으니 내가 어찌 신진(新進)한 간신(諫臣)의 말에 따라 갑자기 끊을 수 있으랴. 경은 이런 뜻을 간원(諫員)에게 갖추 말하라”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교하와 석균의 일은 진실로 희의 과실이옵니다. 그러나 정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 깊이 계교하고 멀리 생각하는 데는 희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지금의 대신으로는 희와 같은 이가 많지 아니하다. 전에 지나간 대신들을 말하자면, 하륜·박은·이원 등은 모두 재물을 탐한다는 이름을 얻었는데, 륜(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도모하는 신하이고, 은(貞)은 임금의 뜻을 맞추려는 신하이며, 원(原)은 이(利)만 탐하고 의(義)를 모르는 신하였다”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참으로 하교(下敎)와 같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이 말하기를, ‘윤이 본래부터 아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머니 속에 간직하였다가 정방(政房)에 들어가서 뽑아 쓰되, 결원이 혹 적으면 도로 집어넣었다가 뒷날에 또 이와 같이 하며, 혹 집에 있을 적에는 쪽지에 써서 보내어 태종께 올리면, 태종께서는 마음에 자못 즐겨하지 않으시나 그래도 마지못하여 죽으셨다’고 하옵니다” 하였다.

다시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대로 그려하였다. 태종께서 희를 지신 사로 삼고자 하여 윤에게 의논하시니, 윤이 말하기를, ‘희는 간사한 소인 이오니 신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제수하셨는데, 이로부터 윤과 희는 서로 사이가 나빠서 매양 단점 을 말하였다. 조말생은 윤의 편인데, 윤이 집정(執政)하자 말생에게 집의(執義)를 제수하매, 그때 희가 대사헌으로 있어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아니하니 윤이 두 번이나 희의 집에 가서 청하였으나 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윤이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태종께서 희를 지신사로 삼기를 의논하시기에 내가 혈어 말하였더니, 희가 이 말을 듣고 짐짓 내 말을 이처럼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희의 과실이 사책(史冊)에 실려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하였다.

임금이 고급 인물의 옳고 그름을 평론하고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승선에게 이르기를, “양홍달(楊弘達)은 의술(醫術)로 국가에 공로가 있었고, 또 아들 양제남(楊濟南)은 태종께서 보호하기를 오래 하셨으며, 양희남(楊淮南)은 나를 잡져(潛邸) 때부터 따랐으니, 비록 천인에 속하였으나 이미 천인을 면하고 양인이 되었으므로, 내가 제남을 3품으로 올리고자 하며, 유한(柳漢)은 공주를 양육(養育)한 은혜가 있어 갚고자 하여도 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그 고신을 도로 주고자 하나 국론(國論)이 두려워 감히 못한다. 한(漢)은 경에게도 친척이 된다”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한은 그 형 유기(柳沂) 때문에 연좌되어 죄를 입었사오나, 한이 기와 더불어 평일에 심히 불화하여 은혜도 없고 또 죄도 없사오니 진실로 가엾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신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연좌의 죄에 어찌 형제간 화목하고 불화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형제가 같이 살아야만 연좌죄를 당하게 되옵는데, 본국에서는 형제간이면

으로 연좌하게 되오니 정리(情理)에 합당치 못한 듯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윤향(尹向)과 윤목(尹穆)에게도 연좌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논하였다” 하니, 송선이 아뢰기를, “하고가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빈(懿嬪)이 박신(朴信)을 소환하라고 청한 것이 하루만이 아니었으나,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신(信)의 죄인즉, 무술년(1418)에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 통사 허초(許楚)가 의금부에서 심온(沈溫)을 잡아 온 일을 누설하였는데 신(信)이 듣고도 그 사실을 아뢰지 아니한 것인데, 매우 교활하였으나 태종께서 그대로 두시고 묻지 않았더니, 뒤에 선공제조(繕工提調)가 되어 윤인(尹麟)과 더불어 싸우자 태종께서 신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다가 무술년(1418)의 일을 추론(追論)하게 되어 죄를 문책하고 내쳤던 것이다. 이제 소환하고자 하니, 경은 위의 세 가지 일을 세 의정과 비밀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에 송선이 아뢰기를, “신이 무오년(1438) 대옥초록(大獄抄錄)을 보온 즉, 심온의 말에, ‘신이 무반(武班)이기 때문에 병권(兵權)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이 말은 이미 온의 참뜻이 아닐 것이옵고 형벌을 두려워하고 형세에 팍박되어 할 수 없이 납초(納招)한 것이며, 또 대변(對辯)하지도 아니하였사오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태종께서 사제(賜祭)하시고 또 예장(禮葬)을 명하셨사오니, 국모(國母)의 친아버지를 죄안(罪案)에 기록하여 두개 함은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 때에 있었던 일이나 뒤에 고칠 수는 없다. 또 온의 말에, ‘강상인(姜尙仁), 이관(李灌), 박습(朴習) 등이 집에 와서, 군사 일은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하니, 이 말로써 논하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송선이 아뢰기를, “금지옥엽(金枝玉葉)이 대대로 이어나가서 만

세 후에도 오히려 죄인이라고 일컬게 함이 가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내가 기필코 듣지 않겠다” 하였다.

송선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이해(李賀)의 고신을 도로 주시기를 청하였더니 윤허함을 얻지 못하였사오나, 신의 뜻으로는, 하가 처음 그 아들 이승지(李崇之)를 온의 집에 보낸 것은 진실로 죄가 있사오나, 그 아들이 이미 벼슬을 받았사온데 아비의 고신을 주지 아니함은 과하지 않사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과 더불어 혼인을 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한 바에 어찌 도로 줄 수 있으리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송선이 아뢰기를, “신이 거듭 생각하오니, 국모(國母)의 아버지를 죄적(罪籍)에 이름을 기록한 것은 심히 불가하옵니다. 만약 태종 대왕께서 오늘날에 계시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는 아니하셨을 것이옵니다. 후세에서 전하를 융통성이 없다고 이를까 깊이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이 융통되지 않는단 말인가. 선군(先君)께 득죄한 사람을 내가 어찌 감히 가볍게 용서하리오” 하였다.

말하기를, “예전에 변계량이 내게 말하기를, ‘무술년(1418)에 의금부에서 큰 옥사(獄事)를 국문할 때에, 허지(許遲)가 형조판서로 있으면서 암술형(壓膝刑)을 가할 것을 먼저 발언하였는데, 지가 오래지 않아서 죽으니 신도(神道)가 과연 헛되지 않다’고 하더라” 하니, 송선이 아뢰기를, “이같은 일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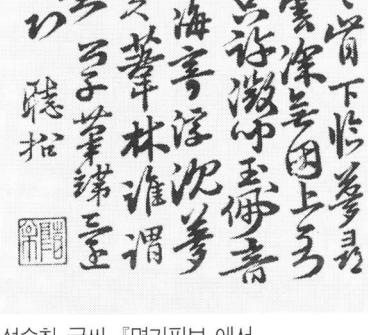
송선이 물러나와 세 의정들과 비밀히 의논하니, 양제남과 희남에게 3 품을 제수하는 일에 대하여 맹사성·권진 등을 가하다고 하고, 황희는 불가하다고 하며, 유한의 고신을 도로 주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 가하다고 하고, 박신을 소환하는 일은, 희와 사성은 가하다고 하고, 진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 황보신의 속공 과전을 황희의 과전으로 바꾸어 주다

<세종 23년(1441) 8월 20일> 영의정 황희가 승정원에 글을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의 자식 황보신(黃保身)이 범죄하였사온데, 받은 바의 과전(科田) 내에 조모(祖母)의 밭과 바꾸어 교하현의 15결(結)을 받았는데, 예(例)로써 속공(屬公)되게 되었사온바, 신의 전장(田莊)이 있는 곳이며 또 신의 어미와 외조(外祖)의 분묘가 가까움으로 신의 과전과 아뢰어 청하여 바꿀까 하와 즉시 글을 갖추어서 이미 승정원에 올렸으나, 신의 자식 황치신(黃致臣)이 와서 말하기를, ‘여러 동료들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은 분명히 전례(前例)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사건이 보신(保身)에게 관계되었으므로 마음에 부끄러워서 이내 상문(上聞)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종용(從容)하게 잘 아뢰어서 신의 과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허락하시어, 세업(世業)을 잃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전하여 길이 분묘를 지키게 하오면, 신이 죽는 날에도 유감이 없겠나이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니 이에 허락하였다.

·성수침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은 조선 중종·명종 때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호는 청송(聽松), 죽우당(竹雨堂), 파산청운(坡山清隱), 우계한민(牛溪閑民)이다. 아우 수종(守琮)과 함께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중종 14년(1519)에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 1541년 유일(遺逸)로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우계(牛溪)에 은거하였다. 죽을 때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낼 수가 없었다. 이에 사간원의 상소로 국가



성수침 글씨. 『명가필보』에서

에서 관과(棺槨)과 미두(米豆)와 역부(役夫)를 지금하여 주고 사현부 집의에 추증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훈(渾)을 비롯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파주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물계(勿溪)의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청송집』이 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경기감사가 파주에 은거하는 성수침의 등용을 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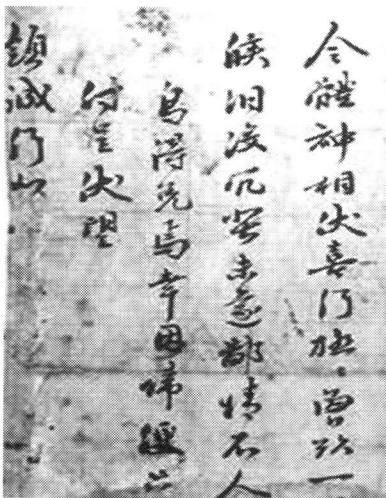
<명종 6년(1551) 12월 21일> 경기감사 유진동(柳辰仝)이 파주에 거주하는 성수침(成守琛) 등이 학문과 조행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장계를 올렸는데, 상이 벼슬에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장계에 성수침은 효행이 뛰어나고 학문은 경전(經傳)과 사기(史記)를 널리 통달했으며 이록(利祿)에 마음을 두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스스로 도를 즐기니 비록 옛날의 은일(隱逸)에 비교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이조에서 성수침의 등용을 건의하다

<명종 7년(1552) 7월 11일> 이조가 아뢰기를, “유일(遺逸)인 사람을 팔도에서 찾아보고 보고하게 했었는데, 경상도·충청도·경기도는 이미 도착하였고 다른 도의 계본(啓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아서 만일 쓸 만한 사람이라면 환히 알 수 있으니, 오늘 서계(書啓)한

자를 우선 먼저 서용하소서.” 파주에 사는 성수침은 효행이 탁이하고 청렴으로 자신을 지켰으며, 학문은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한가히 지내면서 홀로 즐겼고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비록 옛 일민(逸民)에 견주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하니, 주부(主簿)에 제수하라고 전교하였다.

.백인걸



백인걸 글씨. 『근목』에서

건에 다시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명종 6년에 풀려 나와 고향에서 은거하다가 소윤의 거두 윤원형이 죽자 복직되어 명종 22년 71세로 홍문관 교리(校理)가 되었다. 선조 때 직제학(直提學)·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을 거치며 권신(權臣) 등을 논핵(論劾)하다가 사직하였다. 양주목사로 있을 때 정치를 잘하여 양주백성들이 백인걸을 위하여 축수(祝壽)의 시를 지어 올리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 선조 때

휴암 백인걸(休庵 白仁傑, 1497 ~ 1579)은 수원 백씨로 조광조의 제자이다. 중종 14년(1519) 훈구과에 의해 조광조 등 신진 사류가 축출된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스승과 동지를 모두 잊고 마음 아파하며 금강산에 들어갔다. 그후 돌아와 중종 32년(1537)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檢閱), 예조좌랑(禮曹佐郎), 남평(南平)현감, 호조정랑(戶曹正郎),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명종 즉위년(1545)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소윤(小尹)에 의해 파직되고 1547년 양재역(良才驛) 벽서(壁書) 사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기록되었으며 학문에도 뛰어났다. 파주의 파산서원, 남평의 봉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백인걸이 병을 이유로 파주로 귀향하다

<선수 1년(1568) 7월 1일> 백인걸이 병을 이유로 파주로 귀향하였다. 인걸은 지기(志氣)가 보통이 아니었고 과감한 말을 잘하였다. 당시에 기대승(奇大升)·심의겸(沈義謙)이 명망이 있었는데 인걸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기대승은 너무 자신만만하여 반드시 나랏일을 그르칠 것이다. 심의겸은 외척(外戚)으로서 어떻게 정사에 간여할 수 있는가? 지금 선비들이 대개 의겸과 서로 좋게 지내고 있는데, 외척의 권세를 너무 키워서는 안될 일이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인걸이 공격할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인걸을 일러 선(善)을 질시한다고 떠들어댔으므로, 인걸이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게 된 것이다. 혹자가 인걸에게 ‘왜 물러가느냐’고 묻자, 인걸은 ‘나의 학술(學術)이 부족하여 나아가더라도 어찌해볼 수가 없다’ 하였다.

□ 백인걸이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로 돌아가다

<선수 4년(1571) 7월 1일> 백인걸이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로 돌아갔다. 이 당시 사류가 청요직을 차지하고 있긴 하였으나 대신들은 모두 세속을 따라 목전의 안일만 구하여 사류와 서로 논의가 맞지 않았는데, 구신(舊臣)으로서 뜻을 얻지 못한 자들은 틈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겸(吳謙)과 박충원(朴忠元)이 논박을 받자 용렬한 대관(大官)들은 모두 불평을 품고 있었다. 백인걸은 평소에 이준경(李浚慶)의 사람됨을 존경하면서 항상 사류가 대신에게 부합되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이따금 말하기도 하였다. 또 기대승과 심의겸을 인

정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그 과실을 들추었으므로 사류가 심히 의심하였다.

이원경은 준경의 재종제(再從弟)로서 실직되어 불만을 품고 조정에 일이 벌어지기를 깊이 바라고 있었다. 왕의 외삼촌 정창세(鄭昌世)는 덕흥군(德興君) 부인의 아우로서 은택을 입고 벼슬을 얻어 내사복시의 말단 직원이 되었는데, 그 또한 권세를 잡고자 서로 비밀히 모의하여 박순(朴淳)·이후백(李後白)·오건(吳健) 등 10여 인을 공격하려 하였다. 원경은 인걸과 준경을 후원 세력으로 삼아 늘 인걸을 찾아가 박순 등의 과실을 비방하였는데, 인걸은 노쇠하여 그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범범하게 듣고 예사로 답하면서 옳다 그르다 하는 일이 없었다. 원경은 늘 준경의 말을 가탁하여 인걸을 움직였는데, 어느 날 준경의 뜻으로 인걸에게 말하기를, “상께서 이후백과 박순을 매우 싫어하시니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하니, 인걸은 그렇겠다고 예기고 민기문(閔起文)에게 말하였다. 기문이 노수신(盧守愼)을 찾아가 볼 때 원경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문이 말하기를, “백사위(白士偉)가 허튼 일을 하려고 하니 공이 중지시키십시오” 하니, 원경이 말하기를, “백인걸이 사생을 돌아보지 않고 거사하려 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중지하겠습니까” 하였다. 기문이 일어나 간 뒤에 원경이 수신에게 말하기를, “민기문은 믿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백공의 말을 듣고서도 공에게 중지시키라고 말하니, 이런 사람이 어찌 믿을 자이겠습니까” 하였다.

얼마 후 인걸이 수신에게 말하기를, “사람 중에 나이 어리고 기가 높은 자를 내가 억제하려고 합니다” 하니, 수신이 중지시켰다. 이준(李濬)이란 자가 원경이 정창세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하여 심의겸의 형 인겸(仁謙)에게 보였는데, 그 대략에, “앞서 영추(領樞)를 보고 다음에 사위(士偉)를 보았는데 이 일이 오늘내일 사이에 터질 것이니, 서로 내용하여 빨

리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의 논의가 떠들썩 해져 모두 인걸이 장차 사람을 해칠 것인데, 그 일을 준경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탁(李鐸)이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미심쩍어 그의 족친 박수(朴受)에게 그 까닭을 묻고 또 중지시키게 하였는데, 인걸이 놀라 말하기를, “내가 어찌 사람을 해치겠소. 다만 방숙(方叔)을 온당치 않게 여길 뿐이오” 하였다. 박수가 말하기를, “남곤(南袞) 무리의 신무문(神武門) 일을 공이 어찌 담습하려 하십니까” 하자, 인걸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의심합니까?” 하였다. 권철(權輶)도 사람을 보내 인걸을 중지시켰는데, 인걸이 권철과 박순을 차례로 찾아가 스스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사대부들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인걸이 이로 인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갔다.

이 당시 백인걸·노수신·김난상(金鸞祥)·민기문이 을사사화 때 살아남은 선비들로서 명망과 실체가 다 높아 청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높은 지위를 으스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후학을 멸시하여 과격함을 험오하는 점은 이준경과 뜻이 맞았다. 이 때문에 실직한 잡다한 무리들로서 이들에게 명함을 들이밀고 선동하며 문제를 야기하여 기회를 타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에 사람이 모두 장차 큰 사화가 닥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줄을 이어 벼슬을 그만두었다. 백인걸 등도 조정에 편히 있지 못하였으나, 오직 노수신만은 그 뜻이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았고 왕의 은총이 날로 용숭하였기 때문에 예나 다른 없이 그대로 벼슬하였다.

□ 백인걸에게 식물을 내리다

<선조 8년(1575) 10월 16일> 왕이 호조에 전교하기를 “전 대사헌 백인걸이 파주 땅으로 물러갔으니, 고을에서 그의 식물(食物)을 하사하라”

하였다.

<선조 11년(1578) 2월 29일> 경기감사의 서장에, “파주에 사는 동지(同知) 백인걸이 빙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식물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도 백인걸에게 식물을 하사하라고 명하려던 참이었다. 식물을 내려 내 뜻을 보이라” 하였다.

□ 백인걸이 식물을 내려준 일을 감사하고 조광조의 문묘 종사를 청하다

<선조 11년(1578) 4월 15일> 파주가 사는 동지 백인걸이 상소를 올려 내려준 식물에 대하여 사례하고 또 조광조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왕이 답하기를 “우연히 하찮은 물건을 내린 것이니 경은 사례하지 말라. 문묘에 배향(配享)하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하니 때문에 지금 경솔히 의논하기가 어렵다. 경은 그리 알고 있으라” 하였다.

□ 이이가 윤문한 상소를 백인걸이 올리다

<선수 12년(1579) 7월 1일> 양사가 이이의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겨울에 이이가 파주에 있었는데 백인걸이 서울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극론하고 겸하여 동·서의 당론을 화합시킬 계책을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사연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다듬게 하였다. 그러자 이이는 그의 나라 걱정하는 정성을 가련히 여겨 그의 말에 따라 대략 한 편의 문자를 만들어 보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백인걸이 비로소 상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논한 동·서에 대한 한 조목은 이이의 문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백인걸도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허엽(許暉)·이문형(李文馨)이 백인걸을 찾아가 말하기를 “동·서를 논한 조목은 어찌 이이가 올린 상소와 그 뜻이 서로 같은가?” 하니, 백인걸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류들은 이 사실을 시끄럽게 소문냈다. 이이는 당시의 인망을 받고 있었는데 동인들은 이이가 반드시 동인의 형세를 불들어 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상소하여 동인을 나무라자 동인들이 크게 성을 냈다.

정언 송옹형(宋應洞)은 응개(應漸)의 아우인데 사람됨이 경솔하고 무식하였다. 그는 이이가 사류에게 거스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엿보고는 기회를 틈타 공을 세우려고 명류들과 굳게 교제를 맺었는데, 드디어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이를 공격하면서 논의를 일으켜 탄핵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대사간 권덕여(權德輿) 등이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의 허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설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이 죄과가 되겠는가. 그리고 벼슬을 그만두고 물리가 있는 사람을 또한 치죄하기는 곤란하다” 하였다. 이에 대해 송옹형이 강력하게 다투었으나 권덕여 등이 끝내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니 응형이 피협하며 아뢰기를, “백인걸이 상소를 올려 시사를 논한 한 조목은 바로 이이가 대신 지은 것입니다. 백인걸은 칠십이 넘은 늙은 사람이니 나무랄 것이 없으나, 이이는 경악(經懼)의 신하로서 젊어서부터 유자라는 명망을 자부하고 있으니 물리가 산야에 살고 있더라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숨김없이 곧바로 진달해야 할 일이지 무슨 의심하고 꺼릴 것이 있기에 감히 자기의 자취를 숨기고 우회하여 대신 지어 천청(天聽)을 의혹시키려 한단 말입니다. 이는 실로 곧은 도리로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 놀라움을 견딜 수 없어 그의 잘못을 탄핵하여 신하로서의 궐비(詭秘)하고 정직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동료들에게 저지당하였

으니, 신의 소견이 잘못된 것입니다.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권덕여 등도 동료를 테리고 피험하기를, “백인결의 상소에 시사를 논한 한 조목이 과연 이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이는 참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조정이 한창 화평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논핵하기에 이른다면 시끄러움이 더욱 심해질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송옹형과 논의가 합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취를 숨기고 궤비한 행동을 했다고 이이를 책했는데 신들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소견이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대사헌 이식(李栻) 등도 아뢰기를, “이이가 상소를 대신 지은 사실은 이미 경연 석상에서 발론되었습니다. 신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홍문관이 장차 양사를 처치하려고 하였는데 교리 김우옹(金宇顥)이 말하기를, “송옹형이 기회를 틈타 군자를 무함하려 하니 반드시 소인일 것이다. 마땅히 사현부와 함께 체직시켜야 한다” 하였으나, 동료들이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우옹이 계속 극론하기를, “이번 처치가 합당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소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어찌 송옹형 한 사람만 소인이 되겠는가” 하였으나,

부제학 이산해(李山海), 응교 이발(李灝)은 양쪽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두 편을 다 보전하려고 하였다. 이산해가 초(草)한 차자에, “전파된 말이 혹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며 송옹형의 소문 역시 명백한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소문을 믿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권덕여 등이 그의 의논을 따르지 않은 것은 참으로 공변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송옹형이 탄핵하고자 한 것도 폐단은 있을지라도 그 역시 다른 뜻

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이식 등이 말하지 않은 것도 신중히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무슨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문형을 불러서 하문하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니, 이문형이 아뢰기를, “저번에 우연히 백인걸에게, 상소의 뜻이 이이의 상소 내용과 같은데 어떤 까닭이냐고 물으니, 백인걸이 ‘이이와 서로 통하여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에는 달리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홍문관에 답하기를, “사람을 시켜 소장을 올리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뜻이 비록 화평을 귀히 여겨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리상 그의 죄실(罪失)을 염폐하기는 어렵다. 출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권덕여 등이 재차 피험하기를, “이이가 대신 소를 지었다는 말은 혹자들이 운운하고 있으나 그 사이의 곤질은 죄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들의 뜻은 망령되어 화평만을 주장했고 또 송옹형의 말이 지나쳤기 때문에 감히 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리어 억제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니 이제 구차하게 합치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옹형이 또 피험하기를, “이이의 일은 실로 해괴한 것이기에 신의 뜻은 다만 그가 실수한 것을 논핵하여 망령된 행동을 경계하고자 한 것일 뿐이었는데 소신이 경솔하고 망령되어 말하는 사이에 과격한 병통이 있어서 이미 동료들과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었고 또 옥당의 기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이에 왕이 답하기를, “모두 사직하지 말라” 하였는데, 모두 물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송옹형이 이이를 논핵하고자 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데 권덕여 등이 따르지 않았으니, 형세가 서로 용

납하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송옹형은 출사하게 하고 권덕여 이하는 모두 체직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사헌부에서 이이를 먼저 탄핵하려 하였는데 지평 기대정(奇大鼎)이 더욱 힘써 스스로 감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백인걸이 그 말을 듣고 놀 랍고 부끄럽게 여겨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이이가 과연 신의 상 소를 수식(修飾)하고 윤문(潤文)하기는 하였습니다. … 이런 따위의 일을 선유들도 일찍이 해 왔던 것이기에 신은 이이의 글을 차용하는 것을 혐 의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향해서도 숨김없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이이가 신을 유도하여 상소를 올 리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는 자이기는 하나 어찌 감히 신의 본래 의사가 아닌 것을 남이 시키는 것만을 따라 이 상소를 하였겠 습니까. 늙은 신하가 죽을 나이에 다다라 감히 거짓을 꾸며서 전하를 기 망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왕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살펴보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은 안심해도 좋다” 하였다. 그렇게 되자 홍문관은 사헌부가 처치를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왁자지껄 그르게 여 기니, 이식 등이 드러나게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고 물러 가 물론을 기다렸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도 참으로 전파된 말이 혹시 사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송옹형은 경솔하게 소문만을 믿고 부정(不靖)한 사단을 열고자 하였으며, 이식 등은 정당하지 않은 처 치를 하였으니, 전혀 회평케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체차하소서” 하 였다. 이리하여 양사가 모두 다 체직되었다.

좌상 노수신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사헌부가 만약 이이를 공격한다 면 우리들도 당연히 사헌부의 실책을 논계 할 것이다. 어찌 공론이라고

하면서 군자를 해칠 수가 있는가” 하였다. 그리고 수신이 동몽훈도(童蒙訓導) 박형(朴炯)에게 묻기를, “송응형이 이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바깥의 의논은 어떠하던가?” 하자, 박형이 말하기를, “시론(時論)이 비록 이이를 헐뜯고 있지만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문하에 교유하고 있는 학도들이 3백~4백 인이 되는데 내가 그들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묻기를 ‘이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를 군자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후일의 사림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이 망령되게 헐뜯는다고 하더라도 후일의 공론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 노수신이 참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뒤에 경연 석상에서 박순과 더불어 상에게 아뢰기를, “이이는 인품이 분명히 군자입니다. 비록 소탈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헐뜯는 의논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이가 백인결을 유도하여 상소하게 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그르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들어보니 서로 의견만을 통하였을 뿐이었으니, 이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동인들 중에 부박한 자들이 기필코 이이를 해치려고 하였는데, 대신과 김우옹이 큰 소리로 그들의 기를 꺾었기 때문에 끝내 자행하지 못했다.

□ 파주의 유생 정재간이 백인결·이이·성흔 등의 사당 문제를 상소하다

<정조 14년(1790) 2월 13일> 파주의 유생 정재간(鄭在簡) 등이 상소하기를, “백인결과 이이와 성흔 이 세 선현(先賢)은, 같은 세상에 함께 태어났고 이미 죽은 뒤에는 각기 두어 칸 되는 사당이 건립되었습니다. 백인결을 제사하는 곳은 월룡산(月籠山) 휴암(休巖) 아래에 있습니다. 이이는 선대(先代)의 묘소가 자운산(紫雲山) 자락에 있고, 성흔은 일생 동안 은거

하던 곳이 곧 파산촌(坡山村) 안이었습니다. 이에 각기 그들이 살았던 곳
에다가 높여 제사하는 도리를 다하고 있었는데 사당의 기둥이 세워진
후에 일부 선비들이 중간에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면서 ‘성수침·백인결·
이이·성흔 네 선생이 훌륭한 덕망을 지니고 같은 고을에서 함께 태어난
것은 우연치 아니한 일이다. 한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
다’고 하여, 마침내 본주(本州)에 있는 호계(虎溪)의 한 구역을 잡아 사당
을 세우고 차례대로 모실 계책으로, 월룡산에 별였던 역사(役事)를 중지
하고 서원을 호계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때 이이와 백인결은 호계서원
에 합사하기로 하였으나, 성수침·성흔 부자의 사판(祠版)에 대해서는 자
손들이 의논하기를, ‘파산(坡山)은 바로 생전에 살던 곳이므로 옮겨 모실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함께 제향(祭享)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호계
서원이 무너지게 되자 사론(土論)이 또 ‘네 선현을 이미 함께 제사하지 못
할 바에는, 차라리 각기 옛터에 짓는 것이 낫다’고 하여, 이이의 위판(位
板)은 자운산에 있는 사당으로 옮겨가고, 백인결은 예법상 월룡산의 옛터
로 옮겨가야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우선 임시로 파산서원 안에 봉안
(奉安)하였습니다. 이에 성수침과 동서(東西)로 마주앉아 빙주(賓主)의 위
치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바로 송시열(宋時烈)이 정한 예법입니다.

백인결을 처음에 호계에서 제사하다가 나중에 파산으로 옮긴 것이,
비록 한 고을의 선현을 함께 제사하는 의리에 해롭지는 않지만, 옛날에
살던 자운과 파산 두 서원에다 따로따로 모시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감
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을사년(1785)에 성수침의 아우인 절효공(節孝公)
성수종(成守琮)을 파산서원에 추배(追配)할 때, 그 새로 제사하는 서열(序
列)로 보자면 응당 성수침의 다음 자리에 있어야 하긴 하였으나, 그 위판
(位版)을 배정(排定)할 때에 가서는 이내 백인결의 윗자리에다 올리어, 빙
주와 사우(師友)의 좌차(座次)를 거꾸로 두어 성수침이 정한 예법을 준행

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소를 올려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목을 대략 모아 월봉(月峰) 아래의 옛 터에다 두어 칸의 집을 짓고 선생의 사판(祠板)을 옮겨 모시고자 춘조(春曹)에 글을 올렸더니, 춘조에서도 아주 합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聯名)으로 호소하는 바이니, 부디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특별히 두 글자의 현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비답하기를, “중건(重建)하는 것은 처음 창건(創建)하는 것과는 다른 법이다. 합사(合祀)하던 것을 어째서 갑자기 갈라서 설치하였으며, 위치(位次) 또한 어찌 지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이미 반포한 수교(受敎)를 어긴 셈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미 정해진 정론(正論)이 아니다. 원우(院宇)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두 서원 유생들의 일은, 모두 분수에 지나친 죄과를 범한 것이다. 해당 수청(首昌) 유생은 모두 정거(停擧)하고, 충숙공 백인결은 이전대로 합사하되, 위치는 종전처럼 하라” 하였다.

·성흔

우계 성흔(牛溪 成渾, 1535~1598)은 서울 순화방(順和坊, 현 순화동)에서 태어났으나 5살이 되던 해인 중종 34년(1539) 파산(坡山)의 우계(牛溪), 즉 지금의 경기도 파주로 이사하여 자랐다. 성흔의 호도 그가 자란 지명을 따서 ‘우계’라고 하였다. 성흔은 명종 5년(1551)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더 이상 과거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백인결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명종 9년(1554)에는 같은 피주고을에 살던 이이(李珥)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의 벗이 되었다. 그러나 백인결은 이황의 학설을 이어받아 이이와는 선조 5년(1572)부터 6년에 걸쳐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여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선조 초부터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성훈 묘(경기도 기념물 제59호)

아가지 않다가 이이의 권유에 의해 벼슬에 나아가 선조 27년(1594)에는 좌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인 파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다가 파산사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선조 35년(1602) 기축옥사와 관련되어 삭탈 관직되었다가, 인조 11년(1633)에 복관되었으며, 파주에 있는 파산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 문하생을 잘못 둔 죄로 해직된 성훈

<선수 22년(1589) 10월 1일> 정여립의 시체를 군기사(軍器寺 : 조선시대 군기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청) 앞에서 다시 극형을 가하였는데 백관을 차례대로 서게 하였다. 정여립은 동래정씨(東萊鄭氏)로 아버지 정희증(鄭希曾)이 문과에 올랐으나 벼슬은 첨정(僉正)에 그쳤다. 정여립은 장성하면서 체구가 장중하였는데 7~8세에 아이들과 장난하고 놀면서 칼

로 까치를 부리에서 발톱까지 도막내었다. 아버지인 정희종이 누가 한 짓이냐고 꾸짖으며 묻자 그의 집 어린 여종이 여립을 가리켜 말하였는데 그날 밤 여립이 그 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구경하고 있는데 여립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를 일러 바쳤으므로 내가 죽였다” 하는데, 말씨가 태연하였다고 한다.

여립은 아비 슬하에 있으면서도 항상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결단하였다. 아비가 익산군수(益山郡守)로 있을 적에는 아랫사람을 형장(刑杖)으로 때렸으나 아비는 금지하지 못하고 허를 차며 속으로 두려워할 뿐이었다. 과거에 오르게 되어서는 파주의 성훈과 이이(李珥)의 문하에 왕래하였다. 총명하고 논변을 잘하여 성훈과 이이 두 사람이 조정에 천거, 현양시키니 이발(李灝) 등과 교분을 맺었다. 그런데 성훈의 문인 신옹구(申應集)·오윤겸(吳允謙) 등은 같이 거처하며 그가 하는 일을 보고서 마음씀이 불측하여 소원하게 대하였으나 감히 사문(師門)에서 칭찬이나 헐뜯는 일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이이는 그의 인품을 깨닫지 못하였다. … 결국 여립의 옥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학사(學士)와 대부들이 억울하게 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진의 제생(諸生)도 유학으로 이름 삼기를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하여 풍속이 크게 무너졌으나 이는 모두 정여립이 역적질한 빛미였던 것이다.

<선수 22년(1589) 11월 1일> 성훈이 소명을 두 번이나 사양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니 경은 시골에 물러가 있을 수 없다” 하자, 성훈이 이에 소명에 응하여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나 또 계사(啓辭)를 올려 사직하고 죄를 아뢰기를, “신은 아둔하여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신 정여립이 10여 년 전부터 파주에 있는 신을 찾아온 것이 거의 3~4회에 이르렀고 안부와 학문의 서찰에 대해 신이 모두 답하였는데, 선조 17년(1584)에 그만두었습니다.”

다. 듣건대, 신료 중에 한 번 서찰을 통하고서 해직된 사람이 있다 하는데, 신은 더욱 심한 자입니다. 신의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염하게 하소서” 하였다.

□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고 모함받은 성훈

<선수 27년(1594) 3월 1일> 성훈은 병으로 호종(扈從)하지 못하다가 뒤따라 이르렀었는데, 누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최후에 상이 답하기를, “전란 초에 경의 집 앞을 지나갔는데도 경이 나와 보지 않았으니 나 자신도 그 죄가 무겁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였다. 성훈은 또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고 처벌을 기다렸다.

대개 상이 서쪽으로 파천할 당시에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다. 성훈의 집은 파주 파평산 밑 우계(현재 파평산 뒷자락 균방)에 있었는데 큰길에서 20리 가량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상이 한밤에 갑자기 임진강을 건넜으므로 성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상이 호종하는 관원에게 이르기를, “성훈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자 병조좌랑 이홍로(李弘老)가 임진강 가에 있는 고(故) 찬성(贊成) 이이(李珥)의 가정(家亭)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바로 저 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나와 보지 않는 것인가?” 하니, 이홍로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성훈이 어찌 상을 뵙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몹시 괴이하게 여겼다.

성훈이 상의 행차가 있다는 것을 듣고 뒤따라 임진강가에 이르렀으나 나룻배가 이미 끊어져 건널 수가 없어 어가(御駕)를 따르지 못하게 되자 그대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왕세자가 이천(伊川)에서 영을 내려 부르니, 성훈이 처음에는 병으로 사양하다가 차자를 올려 학문의 일을 가지고 진계(陳戒)하였고 또 군국(軍國)의 편의에 대해 15조목을 진술하였는데, 왕세자가 그것을 받아들

였다. 그리고 이정형(李廷馨)과 함께 군부(軍府)의 일을 보도록 명하니, 성훈이 명을 받고 곧 달려갔다. 가을에 이르러 왕세자를 성천(成川)에서 뵙고, 또 성천에서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로 들어가 상을 봤었다. 이에 참소하는 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성훈은 처음부터 기꺼이 난에 달려가지 않았다. 그가 입조(入朝)한 것은 내선(內禪 : 임금이 살아있으면서 그 자제에게 양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니 상은 더욱 의심을 가졌다. 성훈이 계획한 일은 모두 배척당했는데, 그가 이런 엄한 전교를 받게 되자 그를 거리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공격하였다. 성훈은 해직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항상 병을 이유로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선조 35년(1602) 2월 15일 > 사현부가 아뢰기를, “… 성훈은 간홍인 정철과 교분이 깊고 정이 친밀하니 모든 모의에 참여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선조 23년(1590) 무렵에 정철이 중외에 통문을 내어 쌀과 포목을 수합하여 성훈의 아비 성수심(成守深)의 청송당(淸松堂)의 옛터에 큰 집 한 채를 지어놓고는 정철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날마다 모여서 성훈의 지휘를 들으며 흥모를 자행하였으니, 성훈은 곧 정철의 모주(謀主)입니다.

또 선조 24년(1591) 무렵에 정철이 강계(江界)로 귀양갈 때는 성훈이 파주로부터 송도(松都)에까지 따라가서 이틀밤을 자며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조 25년(1592)에 적이 경성에 접근했을 때는 성훈은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하로서 경기의 하룻길 거리에 있었는데도 변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大駕)가 그가 사는 곳을 지나갈 때에도 나와서 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 왕세자가 이천에 머무를 때에 성훈이 멀지 않은 곳에 피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번 불렀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성천으로 이주(移

駐)할 때에야 맨 나중에 왔습니다. 왕세자가 북쪽에 있는 적이 장차 장치(獐峙)를 넘어온다는 말을 듣고 용강(龍岡)으로 급히 옮겨가니, 성훈은 앞 서거나 뒤쳐지거나 하여 모시고 가지 아니하다가 용강이 적에 가깝다 하여 지레 의주로 항해 갔습니다. 당시 대신이 선인(善人)은 천지의 기강이라 하여 승질(陞秩)시키기를 계청하였는데 선인의 도가 진실로 이와 같은 것입니까. 이미 죽었다 하여 그 죄악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훈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 ” 하였다.

이에 양사에 답하기를, “성훈에 관한 일은 조정에서 시비가 올바로 가려졌으니 삭탈 관직할 필요가 없다 … ” 하였다.

□ 성훈의 원통함을 풀어주길 청하는 상소가 이어지다

<광해 즉위년(1608) 4월 8일> 관학 유생 이목(李榮) 등의 상소하기를 “ … 고 성훈은 우뚝이 홀로 서서 일평생을 조용히 지내면서 학문에 힘쓰고 영화에는 마음을 끊어버려, 나가기를 어렵게 하고 물러감을 쉽게 하여 조정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러 소명(召命)을 따라 서울에 들어가 당시 정사를 잡은 사람과 별였던 논의는, 사물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논자들이 이를 당을 위한 일이라 한다면 또한 무고(誣告)가 아니겠습니까.

선비를 죽였다는 말에 있어서는 더욱이 터무니없습니다. 당초 최영경(崔永慶)의 옥사는 전라감사 홍여순(洪汝淳)의 계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성훈은 애초부터 간섭한 단서가 없었으며 뒤에는 오히려 구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했으면서 선비를 죽였다는 죄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그의 죽음을 좌시한 채 한마디의 말도 변명하지 않은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도리어 구원한 자를 죽인 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너무나 사리에 어긋난 일

이 아니겠습니까.

성흔은 파평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에서 직로(直路)와의 거리는 가까운 곳도 몇십 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새벽 도성문을 떠난 거가(車駕)는 저녁때 쯤 임진강을 건넜는데 수령들도 비밀히 하고 전해주지도 반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깊숙이 가려진 곳에 살고 있는 성흔의 형세로 보아 듣지도 알지도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덕 있는 말씀을 내리시어 원통한 자는 씻어주고, 놀린 자는 펴주고, 폐기된 자는 등용하고, 귀양간 자는 풀어주는 오늘날에, 유독 성흔만은 사문의 영수(領袖)로서 오히려 죄명을 갖고 있으니, 아래서 신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원통을 가리는 일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 전하께서 밝은 지혜로 살피시어 속히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명을 내리시어, 여러 선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다면 사문에 더없는 다행이며 국가에 더없는 다행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답하기를, “소장의 내용은 잘 알겠다. 다만 이 일은 전조 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지금에 와서 함부로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4월 10일> 관학 유생 이목 등의 재상소하기를 “성흔은 큰 어진이로서 어찌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군신의 의리를 알지 못하여 대가가 자기의 사는 곳을 지나는데 모르는 척하며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성흔은 초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전하는 말이 ‘대가가 서쪽으로 떠난다’ 하였는데 성흔이 종을 보내어 사실을 알아본 결과 이미 친히 싸우시겠다는 분부를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흔은 전에 들었던 말들은 혗소문이라 여기고 스스로 궐하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흔은 사악한 당의 영수로 지목되어 비난을 받고 있던 중이므로, 나가는 것이 거취의 의리에 손상될까 염려하여 주저하고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병이 가까

이 밀려오자 급작스럽게 도성을 버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길을 치우라는 영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없이 미치지 못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서울에 있는 백성들도 미처 알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파평산에 있던 성흔의 집은 읍내와의 거리는 30리이며, 임진강과의 거리는 20리였으니, 까마득히 소문을 듣지 못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실정이 이와 같았던 것인데, 나와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대가가 파주를 지날 적에 대가의 뒤를 따르던 이홍로는 길가에 있던 성흔의 시묘살이 여막을 가리켜 성흔이 사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홍로의 속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원통하지 않습니까. 성흔의 처형 사평(司評) 신식(申拭)은 대가를 뒤쫓아 임진강에 이르렀는데, 배들이 이미 치워져 끝내 건너지 못하고 성흔의 집을 찾아가 말하기를 ‘오늘 대가가 이미 임진강을 지났는데,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수레를 빨리 달려 바로 관서로 향하였다고 한다. 길마저 통행되지 않아 결코 뒤쫓아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흔은 신식과 서로 통곡하고 헤어졌는데 대가가 송도에 머물 것이라고는 성흔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니, 성흔이 달려가 문안을 드리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정이 이와 같이 된 것인데 달려가 문안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성흔은 사문(斯文)의 영수로서 세상 사람들의 사표(師表)가 되어 인륜을 밝히고 의리를 세웠습니다. 불행히도 소인들의 무고로 비방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난리에 인군을 벼렸다는 죄로 지목하여 아직까지 원통을 씻어주는 은전이 내리지 않아 오래도록 사람들의 통탄이 되고 있습니다. … 전하께서는 원통함을 씻어주라는 명을 내리신다면 사문이나 국가에 더 없는 다행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하유하였다. 너희들은 물러가 뒷날

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11월 22일> 광주목사 신응구(申應梧)의 상소하기를 “… 신이 삼가 성흔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들을 살펴보니, 첫째는 ‘간악한 자의 당이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을 벼렸다’는 것입니다. 성흔은 선왕조에서 세상에 없는 대우를 거듭 입어 해마다 부름과 제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생활을 분수에 달게 받아들이며 평소의 지조를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번 선조 16년(1583)에 이이를 신구(伸救)하면 서부터 크게 시론(時論)에 거슬려 헐뜯는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성흔이 간당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정철이 최영경을 얹어 죽인 것으로 여기는데, 성흔과 정철이 서로 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흔이 정철과 친하게 지냈으나, 본디부터 조정에 서서 일을 함께 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영경을 끝까지 신구한 사실이 있는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신은 들헌대, 정철이 인대하는 날 영경을 위해 효성과 우애 그리고 기절(氣節)이 있다고 진달하였고, 또 익명시(匿名詩)에 대해 추고할 때도 그를 위해 구원해 풀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철과 영경은 본래 평생 동안 모르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이같이 신구했던 것은, 어찌 성흔이 편지를 보내 구원을 청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선조 27년(1594)에 정철을 논의하던 때에 바로 ‘얽어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구원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빼뜨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선조 35년(1602)에 이르자 다시 이 말을 성흔에게 사용하여 소장을 올려 구하지 않은 것을 성흔의 허물로 삼았습니다. …

정철이 위관에서 체직된 뒤에 이별의 80세 된 어머니와 열 살된 아들 까지도 곤장 아래서 죽었으니 그의 원통함을 행인들도 모두 말했는데, 그 당시의 추관들 역시 법을 인용하여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축옥사의

변고가 일어나자 정철이 성훈에게 보낸 편지에 오로지 사대부의 화를 구원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발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 이 알 정도였으나, 당초 국문에서는 힘써 구원해 북도에 정배되었다가 역적 무리의 횡설수설하는 공초로 인해 중도에 도로 불갑혀 돌아와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철이 성훈을 보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언신에게 사사하란 명이 내려지던 날에도 추국하던 여러 신료들이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으나, 정철이 회계 할 것을 주창해 두 차례까지 회계하여 사형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훈이 이것들을 어떻게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여겨 그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조 25년(1592)에 주상을 미처 맞이하고 수행하지 못했던 연유는, 당시 의논들이 바야흐로 성훈을 정철의 당이라고 하였으므로 성훈이 시꼴에서 대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대궐에 나올 수 없었고, 성훈이 사는 곳은 그 고을의 소재와 30리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가가 이미 임진강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며, 또 소문에 이미 난병(亂兵)이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적을 피해 마을들이 모두 비었다고 하자, 성훈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어가가 송도에 머무르리라고는 실로 성훈이 예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성훈의 집이 산 중에 외따로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은 어가가 그의 집 가까이 지나가는 데도 피하고 나와 보지 않았다며 임금을 버렸다고 지목하였으니, 전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성훈에게는 젊어서부터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신고를 겪은 테다가 이질까지 앓아 삭녕(謝寧)의 여승(女僧) 집에 우거해 있었습니다. 이때 전하게서 나랏일을 임시로 맡아보라는 명을 받고 이천에 나와 머무르시며 글을 내려 그를 부르셨는데, 성훈

이 병으로 즉시 나가지 못하고 먼저 차자를 올려 제왕의 학문과 시무(時務)에 마땅한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지나 병세가 조금 수월해지자 바로 병든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서 삭녕의 서쪽 지경에 당도했을 때, 전하께서 다시 글을 내려 성혼으로 하여금 삭녕의 의병을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부득이 중도에서 돌아와 김지(金瀆) 등과 의병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부르는 명이 내리자 성혼이 안협(安峽) 지경에 당도하였는데, 적병이 이천을 습격하였으므로 전하께서 급히 성천으로 끌기셨고, 성혼은 적병이 꽉 차 있어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마침 명령이 내려 이정형과 협력해서 군사를 모집토록 하였으므로, 성혼이 마침내 이정형의 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혼이 전후로 나가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전하께서 군사를 모집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불렀는데도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또한 무고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9월에 이르러 다시 소명이 내리자 성혼이 비로소 나와 10월에 성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혼이 이때에 감히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직하고 서쪽으로 들어갔던 것은 그의 마음에, 먼저 임시조정[分朝]에 갔고 또 그 즉시 임금이 있는 곳[大朝]으로 달려가 안부를 묻지 않아 의리에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탑전에서 말씀드리니 전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음날 장치의 변보(變報)가 갑자기 이르자 전하께서 안주로 끌기셨는데, 성혼도 뒤따라 안주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는 용강으로 갈 계책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혼은 일찍이 성천에서 하직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감히 다시 번거롭게 조정에 하직 인사를 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은 ‘성혼이, 용강이 적병과 가까이 있다고 하여 바쁘게 의주로 향했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임금을 벼렸다고 한 것

은 전혀 실정과 가깝지 않은 말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외척의 권세에 의지해 출세했다’ 하였는데, 이른바 외척의 세력이란 심의겸(沈義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심의겸이 공부하던 시절에 명현들의 문하를 왕래하였는데, 일찍이 파주에 사는 성훈의 아버지 성수침을 방문하였으므로 성훈이 이로 인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훈은 평생 동안 함부로 성시(城市)에 발길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으며, 그가 부름을 받고 서울에 이르렀을 때도 의겸이 세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랜 뒤였습니다. ‘외척의 세력과 뭉쳤다’라고 한 말은, 무슨 근거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역적이 한때 중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성훈이 길러 부추긴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만 역적과 어울린 죄를 면했다’고 합니다. 당초 역적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물러가 글을 읽기로 명분을 내세우고서는 이이와 성훈이 한 시대 유림의 어른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학문을 물었습니다. 이이와 성훈이 그의 기질이 거친 것을 단점으로 여기었으나, 벼슬을 버린 점 때문에 벗들에게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이이와 성훈이 학문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역적이 학문을 묻는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이이가 죽자 역적이 수찬이 되어 서울에 들어왔었는데, 당시 의논이 크게 변해 이이를 공격하는 것이 이로웠기 때문에, 헐뜯으며 아울러 성훈까지 공격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성훈이 초야에 자취를 숨기고 문도들을 모아 스승과 제자라 칭하면서, 날마다 경박한 무리들과 정사를 논하고 인물의 시비를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훈은 본디 산중의 한 선비입니다. 그의 아버지 성수침은 조광조(趙光祖)의 문하 출신으로 높은 풍도와 아름다운 덕이 한 시대에 존경을 받았으나 파주에 은거하면서 학자들이 그를 청송선생(聽松先生)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성훈의 학문은

대체로 집에서 성취된 것인데, 효도·우애·충성·신의와 자신을 반성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비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은 애달프고 애석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흔이 배척을 입은 뒤로 학문을 강론하는 일이 세상에 큰 금물이 되고 말았으니, 어진이가 무고를 입은 것이 문인 한 사람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다행히 선왕의 날카로운 지혜로 살펴주신 데 힘입어 실정에 가깝지 않은 죄를 주지 않고자, 죄명을 결정짓는 날 특명으로 ‘영경을 얹어 죽이고 역적을 길러냈다’라는 등의 말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흔이 선왕에게 인정받은 것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초기에 전일 죄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막론하고 모두 씻어주는 온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흔 혼자만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은 채 씻어질 기약이 없으니, 신이 어찌 성흔의 마음과 자취를 성상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모두 잘 알았다. 스승을 높이려는 정성에 대하여 참으로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였다. 다만 이는 선왕조에 있었던 일이므로 3년 안에는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다.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답지하고 있으니 사체를 손상할까 염려된다. 내 이 때문에 두렵게 여긴다”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11월 25일> 전 서부참봉(西部參奉) 배홍중(裴弘重)이 상소하기를 “이미 작고한 신의 스승 성흔은 한 시대 유림의 사표였는데, 온갖 참소에 말려 이름이 죄적(罪籍)에 들어 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성흔이 임진왜란 때 삭녕의 김지 군중에서 전하의 부름을 받고 성천에 들어갔다가 이어 의주로 나갔으니, 성흔과 김지가 똑같다고 하겠는데 참소하는 자들이 떠들어대었습니다. 죄영경을 얹어 죽였다는 말과 임금을 저버렸다느니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느니 하는 논의들이 또 어

찌하여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의 옥사는 처음에 전라감사 홍여순의 장계에서 시발된 것이고 보면 그 당시의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대신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장)들에게 죄를 떠넘긴 것도 억울한 것 같은데, 더구나 영경은 성흔의 오랜 벗이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영경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는 아들을 보내 위문하였고,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쌀을 보내 부의함으로써 옛날 친하게 지냈던 정리를 온전히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얹어 죽였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깝습니까? 우리 선왕께서 잘못된 내용임을 통찰하고서 성흔의 죄를 결정하는 날에 ‘영경을 얹어 죽였다’는 한 조목을 특별히 삭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그의 죄목을 구성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저버렸다느니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뒤따라 터져나온 것입니다.

성흔이 임진왜란 때 그가 사는 곳이 매우 외떨어진 데다가 어가가 번개처럼 지나가 미처 알지 못하였고 나루가 끊겨 뒤따라가지도 못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임금을 저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또 성흔이 정철의 친한 벗이었으나, 그들의 출처(出處)가 제각기 달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고 말하니, 매우 괴이합니다. 당시의 여론들이 영경을 얹어 죽인 것을 정철에게로 떠넘기고 이어 그를 간악하다고 하였는데, 정철이 위관이었기 때문입니다만, 성흔은 위관도 아니었고 또 정철과 일을 함께 한 자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흔이 선왕조에서 세상에 없는 융숭한 예우를 입었는데, 한 번 연루되자 거짓말로 참소한 바람에 엄한 전교가 여러 차례 내려지고 준엄한 논의가 제기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흔이 비록 초야에 물러나 있었

으나 두려움과 근심 속에 길이 대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임종을 맞아 그 아들에게 유서(遺書)를 주었는데, ‘내가 임금에게 죄를 지었는데, 미처 죄를 받지 못해 황공하게 죽는다. 내가 죽으면 무명옷을 입히고, 종 이로 만든 이불로 염(斂)하고, 띠를 엮어 관을 덮고, 소달구지로 실어다 장사하되, 대략 흙으로 가리우고 예를 갖추어 장사지내지 말라 …’고 하였는데, 이는 지하에서 대죄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성흔이 먹은 마음은 하나같이 성(誠)에서 출발되어 충효와 큰 지조가 천지를 감격시킬 만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비방이 죽은 뼈까지 녹일 정도로 쌓였으나 억울함을 씻을 기약이 없습니다. 선왕 말년에는 큰 간 특한 사람이 국정을 잡아 시기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하늘이 명철한 자를 명해 공론이 차츰 전개되면서 모든 사람이 성흔의 죄를 마땅히 씻어주어야 한다고 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성균관에서부터 밖으로는 여러 도(道)의 유생들까지 거의 거르는 달이 없이 대궐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게서는 갈수록 들어줄 기미가 없으니, 신은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옆드려 원하건대, 전하게서는 신의 이 상소를 내려보내 널리 조정의 공론을 수집하여 원통을 씻어 주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선왕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의 제자들과 학도들이 연이어 상소를 올려 마치 다그치는 듯이 하고 있으니, 자체에 손상될까 염려된다” 하였다.

<광해 즉위년(1608) 12월 20일> 교리 최기남(崔起南)이 상소하기를 “… 태학의 유생들이 성흔의 억울함을 씻어주기를 청하자, 상께서 내린 비답에, ‘옛날 임진왜란 중 선왕의 어가가 성흔이 사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도 성흔이 길에 나와보지 않았고 또 어가가 유숙한 곳에도 달려와 문 안드리지 않았는데, 군신 사이에 어려울 때 서로 돌보이주는 의의가 이같

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신도 성흔의 이런 일들에 대해 또 한 일찍이 의아하게 생각되었으므로 그 이유를 깊이 추적해 본 끝에 그 곤절을 자세히 알아냈습니다. 청컨대 신이 들은 말을 가지고 분변하겠습 니다.

성흔과 정철은 오랜 친구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많은 비방을 샀으며 임진 연간에는 죄를 입을 처지였으므로, 고향에서 대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대죄 중인 사람으로 감히 스스로 대궐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가가 서쪽으로 떠나시는 날에 이르러서는, 성흔의 집은 파평산 아래 외진 곳에 있어 소재지와는 30리나 떨어져 있고 임진강과는 17~18리나 떨어져 있는데다가 관가에서도 불러들이는 명령이 없었으므로, 막연히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성흔의 손윗동서 신식(申拭)이 성흔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어가가 이미 임진강을 건넜으며 평상 시보다 배나 빠르게 달려 곧바로 요동(遼東)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밤은 어느 곳에 머무르셨는지 모르겠다. 또 어가가 나루를 건너 뒤에 동쪽 언덕에 있는 집들을 철거시켜 나루를 통행치 못하도록 명하였고, 어가가 지나간 뒤로 도로에 이미 적병이 나타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다’ 하고는, 이내 성흔과 신식이 마주보고 통곡만 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되자 이웃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온 마을이 텅 비자 성흔도 외딴 산골 짜기로 이사를 갔는데, 어가가 송도에 머물 것이라고는 성흔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가가 지나실 날은 만일 미리 나와 기다렸더라면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미리 나오지 못한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흔이 서울에 종을 보내어 소식을 탐지케 하였더니, 그의 말에 ‘또 상께서 성을 등지고 한바탕 싸우겠다고 전교를 내렸다’고 하였으므로, 민간에서 떠돌

고 있는 서쪽으로 거동하신다는 말도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으며, 또 그의 생각에도 ‘어가가 만일 서쪽으로 떠나시게 된다면 당연히 관가에서 부르는 명령이 있을 것이니, 민간에서 반드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성훈이 또 미리 나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가가 처음 도성을 출발할 때도 창황중에 결정된 일이라서 서울에 있던 신료들 중에도 미처 알지 못한 자가 간혹 있었는데, 더구나 성훈의 집은 소재지의 30리 밖에 있는데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훈이 선왕의 준엄한 전교를 받은 뒤로는 매번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묘지(墓誌)를 초안하였는데, 그 대략에 ‘내가 세상을 속이고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신하로서 누가 나처럼 은혜를 저버렸겠는가.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또 죽을 무렵에 아들에게 남긴 글에 ‘내가 임금의 처벌을 기다리다 횡공하게도 죽음을 맞이했으니, 너는 무명옷을 입히고 무명 이불로 염하고 띠풀로 관을 덮어 소달구지에 싣고 가 장사지내되 대충 흙으로 덮도록 하라’ 하였으니, 그 심정이 애닮기도 합니다.

아, 성훈은 대대로 초야에 살면서 도학(道學)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알아 사람의 높은 명망을 받으며 한 시대의 유림의 종장(宗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친구 때문에 연루되어 전전하다가 뜻밖에 사실 아닌 비방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건대, 그가 무함을 입게 된 원인은 유영경(柳永慶)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삼사의 벼슬아치들이 혹은 사직소를 내기도 하고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삼사가 텅 비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끝내 그 논의에 찬성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단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반드시 모두가 성훈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이 죄를 입은 것에 대해 지극히 통탄스럽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여 맨 먼저 어진이를 높이는 은전을 시행 하시어 모두들 성흔의 억울함이 밝게 셧길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오늘날 내린 전교는 도리어 이렇게 나오고 말았으니, 유림들이 어찌 실망을 금할 길이 있겠습니까. 신이 성흔에게 글을 배운 은혜는 없으나 구구한 마음에는 실로 간절히 우러러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우러러 사모한 이유는, 사실 성흔의 학문이 충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 한 시대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임금을 저버렸다는 것으로 끝까지 이처럼 임금에게 의심을 사고 있으니, 어찌 마땅히 분변해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그의 지극히 가슴 아프고 더없이 억울한 사연을 깊이 살피시고 풀어주신다면 사문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성흔의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체를 생각 않고 협박하는 태도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온당치 않은 일이다. 잠시 뒷날을 기다리더라도 늦을 게 뭐가 있겠는가” 하였다.

<광해 3년(1611) 3월 29일> 부사용(副司勇) 한교(韓橋)가 상소하기를, “돌아간 신의 스승 고 성흔은 유명한 아비의 자식으로 대대로 시골에 살면서 가학(家學)을 전해 받았습니다. 효제와 충신으로 유년 교육을 단정히 닦았고 독서하고 이치를 궁구하여 몸에 돌이켜 실천하였으며, 또 이 이와 더불어 도의의 사귐을 맺어 절차강마하였으니, 그의 조예가 더욱 깊어져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관학에 있는 많은 선비와 밖으로는 초야에 있는 제생들이 해를 가리는 구름을 밀치고 대궐에 상소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한 자가 부지기수이며, … 비록 부르고 임명하고 발탁하심이 거의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었으나 애써 반열에 나아가 직에 이바지하고 녹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계미년의 경우는 병조참지로서 서울에 들어가 은명을 사례하다가 마침 이이가 병조판서

로 삼사의 탄핵을 받는 것을 보고 상소하여 논구하였고, 이이가 죽은 뒤에는 세상을 피해 산골에서 살면서 더욱 영원히 벼슬하지 않을 뜻을 굳혔습니다.

임진년 난리에 서쪽으로 피난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이르러 임금의 행차가 아침에 도성문을 나와 저녁에 임진강을 건넜는데 혼이 살고 있는 곳은 매우 외져 임진강과의 거리가 거의 20리나 되었으니 어떻게 미처 알아서 맞이하여 배알할 수 있었겠습니까.

임금의 행차가 막 임진의 행전(行殿)으로 거동하셨을 때 묻기를 ‘성흔의 집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자 이홍로가 상의 앞에 있다가 손으로 임진강 상류의 남쪽 언덕에 있는 시골집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성흔의 집이 저기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와서 배알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이홍로가 말하기를 ‘이때를 당하여 어찌 와서 배알하고 싶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장단 품관(品官)인 남응시(南應時)가 그 당시에 수라감관(水刺監官)으로 행전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직접 그 말을 듣고 신을 위하여 날낱이 말해준 것입니다.

병신년 가을에 신이 파평의 집으로 성흔을 찾아갔었는데 성흔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하기를 ‘내가 임금에게 죄를 얻었는데 아직까지 벌을 받지 못하고 벼젓이 세월을 보내면서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사서(史書)를 읽다가 한(漢)나라 신하가 북궐 아래에서 자결한 대목에 이르러서 무리하다고 여겨 강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군신의 의리는 천지간에 도망칠 곳이 없으므로 만약 임금에게 죄를 얻고서 책망과 벌을 받지 않았다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슬펐습니다.

임종할 때 자기 아들에게 유서를 남겨 장례를 박하게 치르도록 하였으니, 이는 비록 지하에 들어가서라도 임금에게 대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헤아려 본다면, 죽은 뒤에라도 죄를 받는 것이 바로 그의 바라던 바였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 법이니 어찌 마음에 기꺼워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유현(儒賢)이 무함을 당함에 세도가 점차 어그러져 식자가 놀라고 사론(士論)이 더욱 울적하니 삼가 바라건대 명철하신 성상께서는 살펴주소서.

흑자가 밀하기를 ‘그의 벗인 정철이 기축년 역변에 추관으로서 무겁게 죄를 얻어 먼저 유배되고 나중에 관작을 삭탈당하여 간흉으로 지목되었지만 혼이 절교하지 않았으니, 간흉과 파당을 지은 죄를 더욱 면할 수 없다.’라고 하니, … 신묘년 정철의 죄를 재론할 때에 어찌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10년이 지난 임인년에야 비로소 이미 죽은 사람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였으니, 참소하는 자들이 꾸며낸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갑오년과 을미년 사이에 조정에서 흑 상의 하교로 인하여 성흔에게 별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의 영상 유성룡이 극력 저지하였고, 임인년에 이르러 유영경이 정권을 잡은 후에 영남 유생 문경호(文景虎) 등이 서울에 와서 상소하여 성흔이 죄영경을 무함하여 죽였다고 하자, 이에 시론이 다투어 일어나고 안팎에서 부화뇌동하여 거의 깨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영경의 옥사는 성흔이 파주로 돌아간 지 한참 뒤에 일어났고 또 종종 엄폐하기 어려운 다소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왕께서 그것이 무함이었다는 것을 살피어 관작을 삭탈하고 단지 옆에서 나온 얘기에 근거하여 성흔의 죄를 정했는데, 유성룡이 극력 저지하였던 말과 유영경이 부화뇌동한 자취는 모두 신이 듣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홍로가 처음 그 말을 지어냈고 영경이 마침내 그 죄를 만들었으니 어찌 유림의 통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게서는 속히 성흔의 원통함을 씻어주소서. 그러면 유독 사문의 다행일

뿐만이 아니요, 경대신·체군신·자서민의 도리에 있어서도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소의 내용은 모두 살펴보았다. 성흔의 일은 사람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한교의 이 상소는 논한 것이 힌두 가지가 아닌데 성흔의 원통함을 호소한 한 대목이 가장 상세하였다. 대개 한교는 일찍이 성흔의 문하에서 유학하였기 때문에 성흔의 일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다. 아, 성흔은 세상에 혼하지 않은 명유로 학문에는 연원이 있고 행실은 순정하여 학자들의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히 불우한 때를 만나 살아서는 배운 것을 펴서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였고 화망의 더함이 지하에까지 미쳤으니, 성흔이 수립한 바에 있어서 비록 해될 것은 없다고 하나 세도로 논한다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 성흔이 드디어 관직을 회복하다

<인조 1년(1623) 3월 25일> 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행하고, 이어 조강에 『논어』를 강하였다. … 이정구가 아뢰기를, “기묘사화를 겪은 후부터 사람들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성흔이 차분히 학문하여 사람의 창도자가 되었습니다. 선조께서 유일(遺逸)로 발탁하여 참찬을 제수하기까지 하시었습니다. 뒤에 정인홍의 무고를 입어 관직을 사탈 당함에 이르렀으므로 사람이 지극히 분노하였습니다” 하였다.

윤겸이 아뢰기를, “인홍의 탄핵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으니, 성흔이 일찍이 인홍의 옳지 못한 점을 말하였고, 또 최영경의 처신이 옳지 못함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못하는 짓 없이 모함하였습니다. 영경이 죽음에 이르자 성흔 또한 원통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 성문준(成文濬)을 시켜 위문하게 하였습니다. 성흔은 곧 이이의 친구입니다. 이이와 성흔은 이황(李滉) 이후 일인자로서 그 학문을 펴지 못하고 뜻을 이

루지 못한 채 죽었으니 애석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구가 아뢰기를, “선조의 즉위 초에 특별한 예우를 받아 심지어 이·
흔(珥渾)의 당(黨)이 되고 싶다는 하교까지 있었는데, 끝내는 당론으로 쫓
겨나 영원히 뜻을 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근
래 유자로서 문로의 올바름이 이이와 성훈 같은 이가 없으니, 국가에서
의당 사제(賜祭)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기에 아립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성훈이 죄를 입은 것은 선왕조의 일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이다” 하였다.

윤겸이 아뢰기를, “새로 즉위하신 때라 의당 호오를 분명히 보여야 하
니, 시비를 잘 살펴 조치해야 하지, 어찌 선왕조 때의 일이라 하여 망설
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선왕조의 초정(初政)에
는 즉시 명묘조(明廟朝)의 위훈(僞勳)을 혁파하였으니, 이것 또한 선왕 때
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공론이 이와 같다
면 그 관작을 회복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훈은 자질이 순수하고 조행이 확고하였다. 어려서
부터 가정의 훈계를 받아 학문을 닦는 데 전심하였고, 또 이이와 사귀어
절차탁마의 도움이 있었다. 학문과 실천의 공효를 함께 이루었고, 평소
의 언행이나 집안 다스리는 의법을 한결같이 『가례』·『소학』에 의해 행
하였다. 파산에 은거하여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생을 마치려 하였는
데, 선묘께서 그 명성을 듣고 여러 차례 초빙하여 은총과 예우가 극진하
였다. 신묘사화(辛卯土禍)가 일어나자 평소 정철과 친했다는 이유로 연
좌되고, 최영경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편당의 지목을 받았
다. 임진왜란 때 선조께서 임진강에 이르러 성훈의 집을 물었을 때 이홍
로가 근처 강변의 민가를 가리켜 대답하였기 때문에 선묘의 노여움을
격발하기도 하였다. 선조 35년(1602)에 정인홍이 그 무리를 사주해 상소

하여 지난 일들을 들추어내며 모함함으로써 끝내는 관작이 추탈(追奪)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영경이 옥에 갇혔을 때 성훈이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매우 강력하게 구제하니, 정철이 드디어 입대하여 영경의 구제를 극언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상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었다. 뒤에 와서 도리어 영경을 모함한 것이라고 죄목을 만들었으나, 이는 군소배가 평소 성훈의 높은 명망을 시기하여 반드시 모함해 해치고자 한 것이다. 선조와의 만남에 유종의 미를 보지 못한 것 또한 이홍로의 참소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 드디어 복관을 명하고 이어 제사를 내리며 시호를 주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경하하였다.]

□ 성훈의 문묘종시를 청하는 상소가 이어지다

<인조 13년(1635) 5월 13일> 관학 유생 송시형(宋時鑑) 등이 상소하기를 “… 선왕 때 문묘 종시를 계청한 지 40여 년 동안에 선조께서 완강히 거부하면서 윤허하지 않고 준엄한 비답을 내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대부와 선비들은 한 목소리로 선현을 위하여 변명하였지, 언제 성상의 전교가 그렇다는 이유로 발의된 공론을 중지하였습니까. 오직 두 선현을 헐뜯는 정인홍의 무리만 들고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구실거리로 삼았는데, 이것은 선비들이 다 같이 분노하는 바입니다. 성훈이 선조의 지우를 받고 있을 적에 높은 총애와 남다른 은수가 천고에 없던 바여서 심지어는 ‘나도 이이와 성훈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필경에는 그 좋던 지우의 만남이 끝까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참소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들은 후생이어서 두 유신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를 외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도학 연원이 문묘에 종사된 선현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감히 가슴속의 진정을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마음을 비워 밝게 살피시고 사정(邪正)을 분별하시어 속히 신들의 소청을 윤허하시어, 도맥을 길이 보전하고 사설을 잠재우소서” 하였다.

그러나 상이 답하기를, “문묘 종사의 예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이나 뒤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시형 등이 다섯 차례나 소를 올리자, 다시 답하기를, “따르기 어렵다는 뜻은 이미 다 말하였으니 너희들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3년 6월(1635) 19일> 황해도 생원 윤흥민(尹弘敏) 등 48인, 파주 유생 유옹태(兪應台) 등 36인, 경기 유생 신희도(辛喜道) 등 33인이 모두 소를 올려 양현(兩賢)의 문묘 종사를 청하고, 또 성혼이 모함을 입은 실상을 개진하였는데,

상이 흥민 등에게 답하기를, “두 신이 아무리 어질다 해도 문묘 종사란 그 예가 매우 중대하다. 함부로 논할 수 없다” 하고, 응태 등에게는 답하기를, “신원과 증직이란 곧 포승(褒崇)의 은전이다. 문묘 종사의 예는 함부로 논할 수 없다” 하고, 희도 등에게는 답하기를, “나의 생각은 이미 관학 유생들에게 하유하였다” 하였다.

그 뒤에 평안도 유생 홍선(洪憲) 등 33인도 소를 올려 청하니, 답하기를, “몸을 수양하고 글을 읽는 일이 곧 너희들의 업이다. 알지도 못하는 일을 굳이 논하여 남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지방 유생들의 상소는 모두 관학 유생들이 선동하여 편 것이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있었기 때문에 상의 비답이 이와 같았다.

사학 유생 윤숙거(尹叔舉) 등 140여인이 상소하기를, “채진후(蔡振後) 등이 이론을 내세우고 나가버린 일은 관학 유생이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몰아내었다는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적(權蹟)의 상소는 오로지 모함하기만 일삼고 있으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도로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그뒤에도 개성 유생 고형(高淳) 등 50인, 풍덕 유생 최시달(崔時達) 등 15인, 전라도 유생 김시길(金時暉) 등 195인, 충청도 유생 민여기(閔汝耆) 등 50인이 잇달아 소를 올렸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현개 즉위년(1659) 12월 1일> 관학(館學) 유생 윤흥(尹抗) 등이 문성공(文成公) 이이와 문간공(文簡公) 성훈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선조 때 허락하지 않았던 일을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다” 하였다. 소를 다섯 차례 올리고, 파주 및 황해도 유생들도 누차 소를 진달하여 청하였으나, 모두 유허하지 않았다.

<현개 4년(1661) 6월 20일> 응교 이민적(李敏迪)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김강(金鋼) 등의 상소를 보건대, 선정신 이이와 성훈을 혈胤에 공공연하게 무함하고 더럽히며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후생이 선배에 대해 보통으로 어진 사대부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두 어진 신하의 도덕과 학문은 앞을 빛내고 뒤를 이어주는 근대의 참된 유학자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몰락되고 사악한 말이 마구 넘쳐흐르고 있으니, 방탕한 말과 폐덕한 말에 대해서는 변론할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교묘하게 모함하는 정상에 대해서만은 간략하게 진달하고자 합니다. … 성훈이 국란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설에 있어서는 적신(賊臣) 이홍로의 음험한 참소의 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성훈은 임진란이 일어난 초기에 당적(黨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의리상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 그의 뜻에는 어가가 서쪽으로 거동하면 길에 나와 맞이하고 곡하려고 하였는데, 충주에서 폐했다는 보고가 이르자 어가가 그날로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성훈의 집이 관로(官路)에서 20리 밖에 있어서 뒤늦게야 어가가 이미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가 끊어졌으므로 파주에서 나와 의병의 군중에 종사하였고, 또 군중으로부터

분조로 불려 나아가고 분조로부터 행조(行朝)로 불려 나아갔습니다. 어가가 파천할 때에 길에 나아가 절하고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은 집이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형세상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부르는 명이 내려지자 온갖 죽을 고비를 겪으며 행조로 달려 나아갔으니, 그의 나아가고 물러난 대의에 대해서는 본래 논의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가가 임진나루를 건널 적에 선조께서 신하에게 물기를 ‘성훈의 집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자, 이홍로가 손가락으로 가까운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을 가리키며 거기에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 보지 않는단 말인가?’ 하니, 홍로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그가 어찌 나오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간흉이 때를 틈타 교묘하게 무함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뒤에 정인홍·문경호 무리들이 모두 그 설을 조술하였습니다. 인조 1년(1623)에 곧 신원해 주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지금까지도 무함하는 자들이 여전히 홍로의 의논에 붙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까. …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분명히 분별하고 결단을 내리시어 속히 양사의 청을 따르소서.” 하였다. 그러나 상이 듣지 않았다.

□ 성훈의 사람됨을 물은 효종

<효종 8년(1657) 11월 12일> 상이 홍문관의 강관을 불러 『심경(心經)』 강론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성훈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송준길이 아뢰기를, “성훈은 이이의 친구입니다. 산림의 중망을 입고 선비들의 종사(宗師)가 되었으며, 박순(朴淳) 등과 한 무리의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훈도 벼슬한 적이 있는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선묘(宣廟)께서 특명으로 병조참지에 제수하는 등 정성껏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홍로의 참소를 받아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니, 매

우 안타깝습니다. 선묘께서 서쪽으로 거동하실 적에 파주를 지나면서 홍로에게 묻기를 ‘성흔의 집은 어디인가?’ 하였는데, 홍로가 길가의 시골집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이 집이 바로 성흔의 집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묘께서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서 나를 보지 않는가?’ 하니, 홍로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성흔이 어찌 나와 배알하려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뒤에 성흔이 서쪽 길로 뒤쫓아 달려가 이어 동궁을 호가(扈駕)했습니다. 그러자 홍로가 또 유언비어를 펴뜨리기를 ‘성흔이 세자를 위해 내선(內禪)을 도모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소하고 해치는 말이 얹히고 설키었으니 참혹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신이 없을 때라서 비록 호기는 못했다 하더라도, 서울로 달려와 문안을 했더라면 옳았을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서울을 떠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니, 밖에 있는 사람은 형세상 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 단지 어진지 간사한지를 살펴보고 등용하거나 물리칠 따름이요, 당론(黨論)을 가지고 미리 아랫사람들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찬선은 공정한 마음으로 말을 하니, 감히 유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번 당론으로 말을 하는데, 이미 그 잘못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이 당론을 버리지 않는가”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이황은 바로 당론이 있기 전의 사람이고, 이이는 비록 당론이 일어난 뒤의 사람이지만 반드시 당론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 성흔을 문묘에 배향하고 파주로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다

<숙종 8년(1682) 5월 20일> 예조의 종사(從祀)하는 절목(節目)은 이러하였다. “여섯 현인의 위판(位版)은 봉상사(奉常寺)로 하여금 명륜당(明倫

堂)에서 만들게 하고, 본조(本曹)의 당상관과 성균관의 당상관이 입회하여 살핀 후 기일에 앞서 길일(吉日)을 택한다. 제위판(題位版)하고, 이어서 임시로 안치한 후에 장차 문묘에 합사(合祀)하는 뜻으로써 제사를 지내어 송나라의 네 현인에게 미리 고한다. 이이의 신주(神主)는 해주지방에 있고, 성흔의 신주는 괴주지방에 있으므로, 각기 그 집의 사당(祠堂)에서 문묘에 배향하는 사유로써 예관(禮官)을 보내어 교서(敎書)를 내려서 제사를 지내되, 제관(祭官)과 예모관(禮貌官) 각 1명[員], 항배충찬위(香陪忠贊衛)는 배향하는 공신(功臣)의 집에서 치제(致祭)할 때의 예(例)에 의거하여 말[馬]을 주어서 내려보낸다. 독교관(讀敎官)·전교관(展敎官)·재랑(齋郎)·축사(祝史)·거안집사(舉案執事) 각 1명은 본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임명해서 정하게 하고, 제물(祭物)도 본도로 하여금 일체 사제(賜祭)할 때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교서는 수향(受香)할 때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본가(本家)에 전해 주게 하고, 예(禮)를 거행할 때 그 집 자손은 대문 밖 길의 왼쪽에서 공손히 맞이하고 공손히 전송한다. … ”

무릇 축문(祝文)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다. 성균관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승배(陞配)하는 날 본관(本館)의 당상관이 관관(館官)을 거느리고서 나아가 참여하고, 예조의 여러 당상관도 함께 나아가서 행사(行事)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웃게 여겼다.

□ 성흔의 묘를 치제하다

<영조 127, 영조대왕 행장> 영조 16년 9월에 왕께서 제릉(齊陵)·후릉(厚陵)에 거동하시는 길에 괴주에 있는 문간공 성흔의 묘를 지날 때에 왕께서 교자(轎子)를 멈추고 식(式)하여 경의를 나타내고 관원을 보내어 성흔과 문성공 이이의 묘에 치제(致祭)하게 하셨다.



파주 파평면 늘노리에 위치한 파산서원 전경

□ 성훈의 아버지 성수침과 작은아버지 성수종이 파산서원에 배향된다

<영조 16년(1740) 9월 26일> 파주 유생 이익명(李翼明) 등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파산의 명유(名儒) 성수종을 그의 형인 성수침의 서원에 함께 배향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정조 9년(1785) 2월 25일> 파주의 유학(幼學) 조중길(趙重吉) 등이 상소하여 증 직제학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성수종은 성수침의 아우인데 기묘명현(己卯名賢)이었다. 영조 16년(1740)에 많은 선비들이 글을 올려 호소하여, 이 서원에 배향하도록 하였는데, 영조 17년(1741)에 사적으로 배향한 것을 모두 철폐하라는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조의 당상관이 잘못 알고 아울러 철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중길 등이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복주(覆奏)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조선 중기 학자·정치가이다. 본관은 덕수(德水)로, 강원도 강릉 북평춘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증좌찬성 이원수이며,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이다. 대사헌, 대재학, 호조·병조·이조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고 공부를 쌀로 납부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사창의 설치에 노력하였다.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동호문답』, 『성학집요』, 『격몽요결』 등을

지었으며 『기자실기』를 편찬하였다. 성호과 이기·사단칠정·인심도심 등을 논하였고 유학에 있어서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서 이황과 서경덕의 설을 결충하여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였다. 기호학파를 형성하여 후세의 학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세상을 떠난 후 파주 자운산 선산에 묻혔다. 묘비에 제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 강릉의 송담서원 등 20여 개의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 병으로 사직하고 파주로 귀향하다

<선수 7년(1574) 4월 1일> 이이가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이이가 대사간을 사직하여 체직되었다가 다시 승지에 제수되었는데, 또 병으로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갔다. 떠날 때 사우(士友)들이 많이 만류하였는데, 최영경이 이이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조정을 떠나 물러가니 벼

술한 기간이 짧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반 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어찌 충분하지 않은가’ 하였다. 영경이 말하기를, ‘스스로의 처신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지만 시사는 어찌할 것인가?’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스스로의 처신이 미진하고서 능히 시사를 구하는 자는 없다’ 하였다. 노수신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이가 경연 석상에서 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므로 일을 내지 않을까 염려되어 내가 저지하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이이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물러가면 말하는 자가 없어서 소재(蘇齋)가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소재는 노수신의 자호(自號)이다.]

□ 선조가 이이에게 성훈의 등용을 상의하다

<선조 8년(1575) 10월 25일> 사정전(思政殿)에서 소대하였다. 이이가 이미 파주에서 돌아와서 입시(入侍)하여 학문을 논하다가 아뢰기를, “옛 날에는 학문이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인간의 도리는 사람들이 모두 당연히 해야 할 바이므로 따로 명목(名目)을 붙이지 않았고, 군자(君子)들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것만을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는 도학이 밝지 못하여 인륜의 도리가 폐지되어 당연히 행해야 할 비를 학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학문이란 이름이 생겨난 뒤엔 도리 어 세상 사람들의 지목(指目)을 받아 일부러 허물을 들추어내어 위학(偽學)이라고 지목하고, 선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기고 눈치를 보며 학문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꾀하게 하였습니다. 군주는 모름지기 학문을 주장하여 세속으로 하여금 학문하는 사람은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이에게 이르기를, “산소에 가서 제사지낼 때 성훈을 만나보았는가? 그의 병은 어떠하며, 끝내 벼슬할 수 없던가?” 하였다. 승지 이현

국(李憲國)이 아뢰기를, “성흔은 벼슬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서 벼슬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방관도 할 수 없느냐?”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지방관의 수고로움이 경관(京官)보다 심하니 병자(病者)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래도 학도(學徒)를 교수(敎授)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그것도 병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가하게 있으면서 교수하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진실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병 때문에 할 수 없으니, 한스럽습니다” 하였다.

□ 파주에서 시폐 상소를 올리다

<선조 11년(1578) 5월 28일> 파주에 사는 이이가 시대의 폐단에 대해 올린 상소를 입계하였다. 이에 상이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니, 그의 충직스러움이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 병조판서에서 물러나 파주로 돌아가다

<선수 16년(1583) 6월 1일> 상이 삼공에게 하교하기를, “경들이 이이를 머물러두고 쓰도록 청하였으나 이이는 출사할 리가 전연 없고 병무(兵務)가 매우 급하니, 우선 체직시켜 그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북방 지역의 변보가 한창 급하여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때 조정이 혼란스러워서 어질거나 간사한 자가 분변되지 않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처리하겠지만 본부(本府)로 하여금 의계(議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사가 즉시 전교의 뜻으로 인협하여 사직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의정 박순(朴淳)이 의논드리기를, “이이가 어찌 끝까지 출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체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귀영(金貴榮)은 의논드리기를, “병무가 바야흐로 급하니 이이가 진퇴 문제를 어렵게 여긴다면 체직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지연(鄭芝衍)은 의논드리기를, “이이가 끝내 출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체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의 일에 대해서 상께서 공평한 마음으로 대처하시면 조정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조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이의 영명(令命)도 보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병조판서를 속히 체직시키라. 이이가 이미 나라 일을 그르친 소인의 죄목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영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상의 의논은 어찌 그렇게도 우활한가. 그 마음에 의도하는 바를 나는 정말 헤아리지 못하겠다. 내가 혼암한 임금이라고는 하나 소인과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다. 이이가 향리에 돌아가 훈 구름 속에 은거하면 그 누구라서 얹어매겠는가” 하였다. 이이는 이 하교를 본 즉시 물러나 파주로 돌아갔다.

□ 선조가 벼슬을 시양하는 이이를 안타까워하다

<선수 16년(1583) 9월 1일> 이이는 병조판서와 판돈녕부사에서 체직된 뒤 파주에 물러가 있다가 그 길로 해주로 돌아갔다. 이때에 와서 상소하여 스스로를 탄핵하고 이어 경연·문형 등의 겸직을 파직하고 전후 외람되게 받은 자급들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간청하였는데 말뜻이 매우 간절하였다.

상이 답하였다. “경의 상소를 보니, 아, 하늘이 우리나라를 평치(平治) 하려 하지 않으신인가. 어찌하여 경과 같은 인물이 시대에 뜻을 얻지 못 한단 말인가. 생각건대 이는 하늘이 경의 심성(心性)을 단련시켜 능하지 못한 점을 더 보충하게 함으로써 장차 후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책임

을 맡기려고 함일 것이니, …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은 한번 웃어 넘길 가치도 없는데, 경은 어찌하여 이를 마음에 껴림칙하게 생각하여 성급히 사직하겠다고 하는가. … 경은 속히 와서 나를 보고 품고 있는 생각을 모두 말하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이번 걸음에 달려 있으니, 경은 다시 굳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

□ 사직한 이이를 다시 불러 올리고자 하는 선조

<선조 16년(1583) 9월 5일> 이이가 파주에서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답하였다. “아아, 하늘이 우리나라를 태평의 치세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것일까? 어찌하여 경과 같은 사람이 때를 얻지 못한단 말인가? 아마 하늘이 경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그치고 참을성을 길러 아직 부족한 점을 닦게 하여 장차 이 나라가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해낼 책임을 맡기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남들이 떠드는 말은 한바탕 웃음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마음에 들 것이 무엇이며, 그 때문에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대서야 되겠는가. 경은 속히 와서 나를 보고 회포(懷抱)도 겹하여 아뢰라. 뭇 사람의 뜻을 위안시키는 것은 이번 한 걸음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

□ 이이의 장례와 유가족들을 챙기는 선조

<선수 17년(1584) 3월 1일> 영상 박순이 경연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이이는 목숨이 다하도록 성의를 바쳐 나랏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죽고 말아 임금을 사랑하고 시대를 걱정하는 그의 뜻을 펼쳐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하니, 상이 다른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이 모두 박순의 계사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 답하

기를 “이이의 사람됨은 내가 환히 알고 있으니, 아래에서 다시 주달할 것이 없다. 벼슬이 찬성까지 이르렀다면 품계도 끝까지 갔다고 하겠는데 추증한다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다만 그 처자가 파주로 갔다가 다시 해주로 간다고 하니, 본도로 하여금 가는 길을 호송하게 하고 장례하는 모든 일도 보살펴 주도록 하리” 하였다.

□ 제자들이 스승 이이의 무함을 고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선수 20년(1587) 3월 1일> 성균 진사 조광현(趙光竑)·이귀(李貴) 등이 상소하여, 스승 이이가 시배(時輩)들에게 무함(諱陷)당한 정상을 극력 논하였다. 이때 조정 논의가 성훈·이이와 조금이라도 가까이한 자는 차례로 배척당하였다. 그래서 성훈·이이를 위하여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관학유생이 오현(五賢)의 종사(從祀)를 청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유생들을 불러모으고는 상소 끝머리에 ‘정도(正道)를 그르치고 진리를 어지럽히며 이름을 낚고 성예(聲譽)를 구하였다’는 등의 말을 몰래 첨가하여 성훈·이이를 공격하였는데, 전일 성훈·이이를 존중하던 무리들도 모두 알지 못하고서 거기에 서명하였다. 이귀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 있었으므로 이귀가 성내어 동료를 거느리고 소장을 갖추어 이를 변명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이 화를 두려워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유독 조광현과 소장을 지어 동서(東西) 논의의 수말(首末)을 두루 진달하는 한편 조헌(趙憲)의 논의가 치우쳤음을 말하고 힘써 손순(遜順)하여 중도에 맞게 하려 하였는데 조광현은 그것은 감히 하지 못하였다. 이귀가 이에 이경진(李景震)을 시켜 별도로 상소하게 하고 그가 지은 소장도 올렸다. 그 소장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지난 번에 상소를 올려 죽은 스승을 위하여 원통함을 송변(訟辯)하였으니, 스스로 천위(天威)를 범하여 죄가 용서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일이 국론(國論)에 관계되고 비방이 사문(師門)에 미친 것을 보게 되어서는 죽은 스승의 마음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공주 제독(公州提督) 조현이 소장을 올려 일을 맡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그 소장을 얻어 읽어보고는 한숨을 쉬며 크게 탄식하여 ‘조현은 우리 당(黨)의 선비인데 그 말이 중도에 맞지 않고 사실에 어긋남이 이러함에 이르렀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죽은 스승이신 이이는 평생 봉당(朋黨)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힘을 다해 사류(士類)를 보합하여 시세의 어려움을 구제하려고 하였는데 뜻을 품고서 성취하지 못하고 불행히 마음과 힘을 다해 애쓰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스승은 평일 학자들과 말을 할 적에는 의리의 문자에 관한 것이 많았고 조정의 시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생들 사이에는 혹 죽은 스승의 의논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현의 말에 이르러서는 사문의 종지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론(士論)의 거조에도 해로움이 있었으니, 문생이 된 자로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죽은 스승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지·후생들 몇 명과 각기 듣고 본 바를 참고하여 죽은 스승이 평생 조정에 벼슬하면서 했던 언론과 심적(心跡) 가운데 현저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대강 기술하였습니다. 먼저 죽은 스승의 지극히 공정한 논의를 진달하고, 다음에 조현의 일방적인 말을 설파하여 기어코 세상에 드러내어 밝히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도 반드시 듣고 싶지 아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이 이미 작성되자 다시 수정자(守靜者)의 말에 동요되어 의논이 귀일되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지금 수정(守靜)하자는 말에 동요되어 그만둔다면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목숨이 불어 있는 한 죽은 스승의 심사(心事)를 기어이 드러내어 밝히고야 말겠

다. 그렇게 해야 죽은 스승의 평일의 논의를 신명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게서 불쌍히 여겨 재결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 이때 정철이 자못 떠도는 말에 의혹되어 처음에는 이이가 동인을 사적으로 두둔한다고 의심하였는데, 이이의 서찰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겸의 제배들은 이이를 의심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만일 그뒤에 다시 이이의 심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서인이 이를 치는 것이 반드시 오늘날 동인의 소위에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이의 자운서원에 합향했던 김장생과 박세채의 배향에 대한 논의

<숙종 39년(1713) 5월 28일> 파주 유생 조익주(曹翊周) 등이 상소하여 김장생(金長生)을 파주에 있는 이이의 자운서원에 배향하고, 박세채(朴世采)의 합향(合享)을 폐지하여 배향으로 강등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는 박세채가 일찍이 이미 자운서원에 합향되었는데, 김장생이 이제 또 배향하게 되면 박세채의 합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예조판서 김우항(金宇杭)과 참판(參判) 민진원(閔鎮遠)이 아뢰니, 시행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파주 유생 문후창(文後昌)이 상소하기를, “당초에 박세채를 이이에게 배향을 시켰다면 불가할 것이 없지만 병향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하루아침에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출향(黜享)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아울러 향사된 예(例)를 낱낱이 들어서 밀하기를, “조익주 등의 의도가 과연 김장생을 높여서 향사하려는 데 있다면, 어째서 스승과 제자를 병향에는 예를 버리고 이에 도리어 배열(配列)에 급급하여 박세채의 오래된 신위를 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주(本州)의 남계(南溪)는 바로 박세채가 은거하며 거닐던 곳이니, 이 곳에다 따로 사원(祠院)을 세워서 이리로 옮겨 봉안(奉安)을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소를 예조에 내리니, 김우항과 민진원이 연명(聯名)하여 사직소를 올려 말하기를, “자운서원은 이이를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문인인 김장생 같은 이가 향사에 참여되지 못했다는 것은 흠이 되었습니다. 이미 추향(追享)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여 병열하는 것은 미안(未安)한 바가 있고, 박세채가 비록 이미 합향이 되었지만 이제 김장생을 위하여 배위(配位)를 옮기는 것이 위차(位次)로 보아도 적당하고, 정례(情禮)로 보아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제 문후창 등이 그 폄강(貶降)을 의심하여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미 복주(覆奏)를 잘하지 못하여 반박하는 의논이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찌 그 당초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어찌 감히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당초에 복주한 것은 진실로 의견(意見)이 있었으니, 다사(多士)의 상소를 어찌 반드시 불만족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뒤에 해당부서에서 문후창의 상소에 대해 복주하기를, “따로 의견을 낸 것은 진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종전의 처리한 바에 따라 강배(降配)토록 하고, 사우[祠]가 건립되기를 기다려 위판(位版)을 옮겨 봉안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옛 신하를 그리워하는 임금

<영조 16년(1740) 8월 30일> 상이 파주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선정선 성혼의 묘를 보고 가마 안에서 허리를 굽혀 예(禮)를 표하고 직접 제문(祭文) 두 구(句)를 지었으니, 말하기를, “지금 나의 고심(苦心)은 곧 선정의 마음이다. 길가 교자 안에서 허리 굽히니 감개한 마음 한없이 깊도다” 하였다. 이를 치제(致祭)의 제문(祭文)에 넣으라고 명하였다. 박석현(朴石峴)에 이르러서는 부로(父老)들을 모아 농사의 형편을 하문하고 나서 탄식하기를, “벼이삭이 된서리에 손상되어 빈 껌질만 남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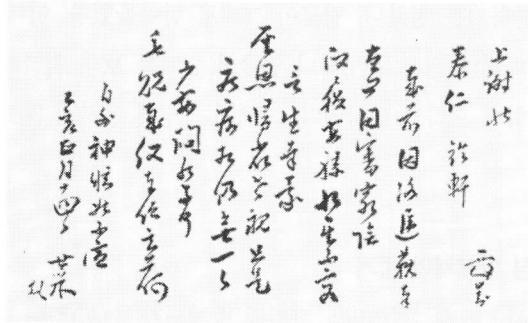
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한참 동안 가엾게 여겼다.

임진에 이르러 교리 김한철(金漢喆)이 아뢰기를, “이곳은 서로(西路)의 요충지입니다. 앞으로는 삼면(三面)에 천연의 요새가 있고 또 긴 강이 가로막고 있어 버리기 아까운 곳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는 스스로 덕정(德政)을 닦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세가 협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하였다.

부교(浮橋)를 건너 북쪽 언덕에 이르러서는 선정신 이이의 화석정(花石亭)의 옛터를 하문하니, 승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저 남쪽 언덕 위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는 가운데 날아갈 듯이 드러나 있는 것이 그 정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끼는 우계(牛溪)의 묘를 보았고 지금은 선정이 거처하던 곳을 바라보니, 덕용(德容)을 접한 것 같아 창연(愴然)한 마음이 배나 간절하다” 하고, 또 직접 제문 두 구(句)를 지어 치제하는 제문에 첨입하도록 명하였다.

.박세채

박세채(朴世采, 1631~1695).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 1649년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2년 만에 과거공부를 포기하였다. 1651년 김상현(金尙憲)과 김집(金集)에게서 배웠다. 1659년에 천거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는데, 5월에 효종이 죽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여 서인측의 이론가적 인물이 되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박세채는 관직을 사탈당하고 양근·지평·원주·금곡 등지로 유배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80년 경신환국으로 그는 다시 등용되어 사헌부 집의로부터 대사헌·이조판서·우참찬 등을 거치며 송시열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노·소 분열 이후에는 윤증(尹拯)을 두둔하



박세채의 글씨. 『근묵』에서

고 나아가 소론계 학자들과 학적인 교류활동을 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에는 다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서 아인생활을 하였는데 이때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는 학구적 시기로 많은 저술을 남겼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에는 정계의 영수격인 송시열이 죽고 서인 내부가 노론과 소론으로 양분된 상태였으므로, 박세채는 우의정·좌의정을 두루 거치며 이른바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다. 그는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 등과 더불어 이·성혼에 대한 문묘종사 문제를 확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동법의 실시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에 가서 나오지 않다

<숙종 20년(1694) 11월 25일> 좌의정 박세채가 파주로 갔다. 이어 그의 아들 박태은(朴泰殷)을 시켜 비밀상소문을 올리기를, “아픈 몸을 겨우 참아 왔기에 오래 지탱할 수 없었거니와, 북쪽 사신(使臣)이 장차 오게 되어 있으므로, 만일 ‘아무가 정승이라는데 어찌하여 마중 나오지 않느냐?’고 한다면, 큰 일이므로 앞당겨 도성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하고, 이어 차자를 올려 해직해 주기를 바랐다.

승지 윤이도(尹以道)·이동욱(李東郁)·서종태(徐宗泰)·이징명(李徵明)이 청대(請對)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윤이도 등이 성의와 예의를 다하여 박

세채를 소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때 영의정 남구만도 세 차례나 정고(呈告)하니 임금이 승지를 보내 격려하도록 하고, 이어 그와 함께 오라고 명하였다. 박세채는 명에 응하지 않고, 남구만은 출사했다.

□ 좌의정 박세채의 졸기

<숙종 21년(1695) 2월 5일> 좌의정 박세채가 졸(卒)하니 나이 65세였다. 박세채의 자는 화숙(和叔)으로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의 손자이다. 자품이 순수하고 덕성이 온순하여, 20세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효종조에 태학(太學)의 여러 유생을 인솔하고 상소하여 이이와 성훈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청하니, 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미안(未安)하다는 비답이 있었다. 드디어 과거공부를 중지하고 오로지 성리서(性理書)에 뜻을 기울여 이학(理學)에 침잠(沈潛)하고, 예서(禮書)를 정밀히 연구하여 상례(常禮)·변례(變禮)의 의심나고 불분명한 것에 대해 많은 고증(考證)이 있었으므로, 많은 학도들이 모여들어 일세(一世)의 유종(儒宗)으로 추존하였다. 저서가 매우 많아 수십 종에 달하니, 사람들이 그 해박한 학식에 탄복하였다. 현종께서 누차 세자시강원 대사헌으로 불렀으나 역시 명에 응하지 않았다. 임금이 많이 부르니, 결국 조정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후에 걸쳐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 세 차례인데, 계해년(1683)에는 입조하여 요악한 무녀(巫女)에 대해 논하였고, 무진년(1688)에는 역종(逆宗)을 논하였으며, 갑술년(1694)에는 명의(名義)를 제창하고 윤기(倫紀)를 부식하였다. 또 송준길(宋浚吉) 등 여러 현인들과 뜻이 같고 도가 부합하여, 반드시 춘추(春秋)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를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벼슬을 제수하는 고신(告身)에 특별히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음으로써 그 의지를 펴도록 하였다. 처음에 현석(玄石)에 거주하니 학

자들이 현석선생이라 일컬었으며, 나중에 파주의 남계(南溪)에 거주하니 이내 남계선생이라 일컬었다. 작년 겨울에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로 돌아가자, 여러 번 소명(召命)을 내렸지만 끝내 조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출하니 사람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박세채는 계해년 이후로 의견이 송시열과 자못 맞지 않았다. 그런데 송시열을 위해 가마(加癡: 소렵 때 상제가 처음으로 수질을 쓰는 것)하자 윤중에게 큰 원한과 분노를 샀으나, 사론(土論)은 그의 마음가짐의 공평함을 훌륭하게 여겼다.

부고(訃告)가 전해지자, 임금이 전교하기를, “좌의정 박세채는 일세(一世)의 중망(重望)을 짊어지고 사람의 영수가 되었다. 평생의 언행은 반드시 예법을 따랐고, 재상의 지위에 오르자 정색(正色)을 하고 조정에 섰다. 연석(筵席)이나 장주(章奏)에다 간절히 아뢴 것은 모두가 속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가 의지하기를 주석(柱石)과 같이 할 뿐만이 아니었는데, 지난 겨울에 마침 사고(事故)로 인하여 처지를 남겨놓고 서울을 떠났다. 바야흐로 승지(承旨)를 보내어 나의 지극한 뜻을 타이르고, 마음을 바꾸어 조정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한 번 걸린 병환이 더욱 위중해져 흉한 소식이 문득 들려오니, 슬픔을 억제하기 어렵다” 하였다. 해당부서에 명하여 제수(祭需)를 넉넉히 주도록 하고, 녹봉도 3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도승지를 보내어 조문하였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 박세채를 자운서원에 합향하다

<숙종 21년(1695) 5월 20일> 파주 유학(幼學) 정수하(鄭綏夏) 등이 상소하여 박세채를 이의의 자운서원에 합향할 것을 청했다. 해당 조에서 복계(覆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2. 효자, 효부, 열녀

□ 예조에서 교하현의 효자에 대한 포상을 주청하다

<세종 13년(1431) 10월 28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기도 … 교하현에 사는 황염(黃欖)은 부모가 죽자 6년을 연달아 무덤을 지키면서 채식(菜食)하고 죽을 먹으며, 거적자리에 자고 흙덩이를 베고 올기를 그치지 않았다. … 위의 항목(項目)의 효자(孝子)·절부(節婦) 가운데서 포상(褒賞)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예에 의거하여 복호(復戶)하고, 효자로 재주가 벼슬할 만한 사람은 재주를 헤아려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윤페상이 부모의 분묘 배알과 조부모를 근친하는 것을 돋게 하다

<세조 10년(1464) 12월 12일> 동부승지(同副承旨) 윤페상(尹弼商)이 강음(江陰)에 가서 부모의 분묘(墳墓)를 배알(拜謁)하고 파주에 가서 조부모를 근친(覲親)하고자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웃 1령(領)을 내려주고, 승정원에 명하여 황해도와 경기의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여 부모의 분묘에 치제하고 조부모에게 잔치를 내려주게 하였다. 윤페상이 오랫 동안 형옥(刑獄)을 맡았는데, 모든 아뢰고 대답하는 바가 모두 임금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더욱 무거웠다.

□ 효행이 큰 윤희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명종 15년(1555) 5월 24일>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하의 선행(善行)은 충효보다 큰 것이 없다. 참으로 충효하고 우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중한 상을 내려야 할 것이니, 비록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 윤희경(尹希慶)[충의위(忠義衛)]이다. 평소 효행이 있는 사람이다. 조모가 죽자 심상(心喪) 3년을 지냈고, 그 어미가 죽어서는 파주

에서 묘를 지키면서 3년 간을 한 번도 여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새 벽과 저녁으로 산소에 올라가 분향하고 슬퍼 울었고 조석으로 몸소 전 을 올렸으며, 머리띠과 허리끈을 풀지 않고 종일 무릎 끓고 앉아서 『소학』과 『가례』만을 읽었고, 제사는 반드시 예문을 따랐다. 복을 마치자, 그가 나이 9세 때 아비를 여의고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3년 간의 추복(追服)을 모친상 때와 똑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40여 세에 머리가 모두 백발이 되었다. 복을 마치고 재산을 분배할 적에는 그의 여동생에게 ‘나는 선대의 음덕(陰德)으로 빙궁하더라도 천역은 면할 수 있으나 너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었으니, 땔나무를 지고 물을 길어오는 천역을 면하기 어렵다’ 하고, 노비와 전답을 두 배로 주니 온 고을이 모두 탄복하였다]에게 관직을 제수(除授)하라고 이조에 이르라. 그리고 효우(孝友)의 명성을 얻은 자는 처음에 상직(賞職)을 주었더라도 뒤에 현직(顯職)에 등용하지 않으면 게을러져서 국가에서 가상(嘉賞)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종신토록 발탁하여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도(公道)는 사라지고 사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이번에 충효 있는 자를 이처럼 발탁하여 등용한다고 명하였는데도 전조를 맡은 자들이 등한히 하여 거행하지 않았으니, 어찌 주의(注擬)하는 즈음에 먼저 뇌물의 많고 적음을 보아서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매우 애석한 일이다.]

□ 파주의 열부 문씨를 정려하다

<영조 39년(1763) 2월 29일> 파주의 열부(烈婦) 문씨(文氏)를 정려(旌閭)하였다. 열부 문씨는 천인(賤人)인데, 어떤 자에게 강제로 겁박을 당하여, 온 몸이 난자(亂刺)되어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온 지경에 이르

렸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죽었다. 대신(大臣)들의 상소로 인해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해 보고하게 하고는 특별히 정문을 세워주는 은전을 베풀었던 것이다.

□ 효자들과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고 호역을 면제해 주다

<정조 10년(1784) 11월 11일> 효자와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였는데, … 파주 열녀인 사인(土人) 홍우주(洪宇周)의 처 이씨 등의 호역(戶役)을 면제해주었다.

□ 임진왜란 때 전사한 전 파주군수를 표절사에 제향하다

<순조 6년(1806) 7월 13일> 예조에서 각도의 유생이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조사한 뒤에 … 아뢰기를, “파주의 고(故) 군수 이몽태(李夢台)를 표절사(表節祠)에 배향시키소서. 임진년 난리 때 이몽태가 안성군수(安城郡守)로 감사(監司) 심대와 함께 삭녕 지방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입니다. … ”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파주 김한규의 처 조씨 등이 열녀정려질에 오르다

<순조 12년(1812) 3월 13일>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의 충·효·열의 문서’를 정부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 … 열녀정려질(烈女旌閨秩)에 파주 고 사인 김한규(金漢奎)의 처 조씨(趙氏)를 비롯해 89명이 올랐다.

3. 파주에 머문 사람

□ 교하현 사람 전 도총제 노필의 졸기

<세종 9년(1427) 6월 25일> 전 도총제 노필(盧弼)이 졸하였다. 노필은 교하현 사람으로서,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별장(別將)에 임용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삼사우윤(三司右尹)을 거쳐 판전농사재시사(判典農司宰寺事)를 역임하고, 상호군으로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제수되었고, 우리 태조 7년(1398)에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와 공조·예조의 전서(典書)가 되었다가, 해주목사와 우군총제로 나가서 우군도총제로 승진하였는데, 세종 4년(1422)에 병이 들어 벼슬을 사절하고 요양하기 6년 만에 이날 세상을 떠나니, 나이 73세이었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고 제사와 부의를 내리었다. 시호를 양간(良簡)이라 하였으니, 온랑하여 약을 좋아함이 양(良)이요, 평이하여 잔말 없음을 간(簡)이라 한다. 아들은 넷이니, 신의(信義)·신례(信禮)·신제(信悌)·신충(信忠)이었다.

□ 파주에 있는 강희백 어미의 무덤의 길흉을 알아보게 하다

<세조 8년(1462) 1월 4일> 임금이 고양 뒤의 고개에 거동하여 장지를 상지(相地) 땅의 생김새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일)하고 … 이르기를 “이 산에는 쓸 수가 없다” 하고, 정인지·정창손·권남·황수신과 계양군(桂陽君) 이중(李增),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순지(李純之), 이조참의 임원준(任元濬),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문형(李文炯) 등에게 명하여 파주에 가서 강희백(姜淮伯)의 어미 무덤을 상지하게 하고 어가를 돌이켰다.

□ 역적에 연좌된 이계량의 가솔들을 교하에 안치하다

<성종 12년(1481) 1월 16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역적에 연좌된

… 난신 이계량(李季良)의 삼촌 조카 석을동(石乙同)은 교하에 … 안치시 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김안로를 파주보다 멀리 귀양보내길 청하다

<중종 19년(1524) 11월 17일>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죄가 무거운데, 파주에 부처(付處)한다 하니, 이것은 공론을 채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 모름지기 멀리 귀양보내어 공론에 따르소서” 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파주 지나는 길에 있는 윤은로의 묘에 치제하도록 전교하다

<중종 29년(1534) 8월 1일> 정원에 전교하기를 “증판서 윤은로의 묘가 파주의 지나는 지역에 있는데, 은로는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친족이니 감사에게 명하여 그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치제(致祭)케 해야 할 것이다.

□ 동궁의 나인 사랑금을 파주에 유배하다

<중종 39년(1544) 7월 6일> … 전교하기를, “정유년에 사랑금(思郎今)을 파주에 배소(配所)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 은대의 배소를 파주보다 더 먼 곳으로 옮기게 하다

<중종 39년(1544) 7월 10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은대(銀代)의 죄는 중하여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웠는데 위에서 대신이 아뢴 바에 따라 끝내 외방에 귀양보내는 데에 그치고 배소를 장단으로 정하였습니다. 장단은 경기도 안의 가까운 고을이므로 외방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문외 출송(門外黜送)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극악한 사람을 지극히 가까운 도하(都下)에 둘 수 없으니, 멀리 귀양보내도록 명하소서. 은

대의 죄악은 귀양에 그치는 것도 매우 다행인데, 의금부가 위에서 계속 감싸시는 뜻을 알아차려 그 배소를 경기도 내의 하룻길에 정하였습니다. 바라는 대로 하라는 분부가 있었더라도 이미 외방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으니, 외방으로 귀양보내는 것은 경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닌데, 공론을 업신여기었으니 파면하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은대의 죄는 문외출송하는 것이 온편하지 못한 듯하므로 외방에 유배하였다. 전에 동궁(東宮)의 내인 사랑금(思郎今)을 유배할 때 외방으로 보내라고 전지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그 배소는 파주에 그쳤다. 더구나 장단은 이틀길이니 이름은 기전이나 또한 외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 어지러이 고칠 것 없다” 하였다.

□ 파주에 유배된 윤강원을 풀어주다

<선조 0년(1567) 10월 15일> 전교하기를 “을사년 이후에 죄를 받은 사람들은 허물이 없는데도 걸린 자들이 매우 많다. 모두들 그 당시의 공신인 이기(李芑)와 윤원형(尹元衡)의 무리들이 선왕(先王)께서 어리신 것을 틈타 아주 작은 원망이나 터럭만한 혐의만 있어도 반드시 그 기회에 터뜨린 데 연유했던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은전을 베푼다. … 파주에 이배(移配)된 급제 윤강원(尹剛元)은 방송하여 직첩을 되돌려 주고 서용하라” 하였다.

□ 파주에 머물면서 근신했던 전 청양군 심의겸의 졸기

<선수 20년(1587) 9월 1일> 전 청양군(青陽君) 심의겸(沈義謙)이 졸하였다. 심의겸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천성이 엄하고 근신하여 밖으로는 조사(朝士) 가운데 선류(善類)를 부호하고 안으로는 궁금(宮禁)의 사적인 길을 막았으니 일시의 사부(士夫)가 이로써 중하게 여겼다. 그

러나 공척(攻斥)하는 자는 또한 이것을 구실로 삼아 그가 전천(專擅)함을 논하여 양기(梁冀)와 두현(竇憲)에 비하였으나 팀오(貪汚)한 명칭을 가하지는 않았다. 명경(名卿)과 현사(賢士)로서 일찍이 그와 서로 사이좋게 지낸 자는 모두 연루당하여 간당(奸黨)으로 지목되었지만, 모두 차마 버리지 못하고 전처럼 사귀고 가까이 지냈다. 심의겸이 파주 촌사(村舍)에 몰려나 있으면서 시론(時論)이 더욱 준엄함을 듣고 매양 집안 사람에게 말하기를, “밥상에 조복(條鯛) 요리를 올리고 입으로 사론(士論)을 말하였으니,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대개 조복은 금중(禁中)의 특이한 반찬으로 외척에게 나누어 보내는 것이다. 심의겸이 시종 사론과 주선하였으므로 처음 청명(清明)할 때를 드러낼 만한 과악(過惡)이 없었으나, 권세의 혐의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임금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禍)의 우두머리가 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가 받아들여 죄로 삼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 파주에 묻힌 황보인의 관작을 추복시키다

<영조 22년(1746) 12월 27일> 유신을 불러들여 『제법(帝範)』을 강하고 나서 단묘조(端廟朝)의 상신 김종서(金宗瑞)·황보인(黃甫仁)·정분(鄭苯)의 관작을 추복(追復)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황보씨와 김씨의 후손이 상언하여 신원을 청구하니 사안을 대신들에게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들이 윤허하는 것이 좋다고 헌의하였으나 임금이 정난(靖難)의 공훈에 광묘(光祖)가 간여되었다는 이유로 난처해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옛날 태종께서는 정몽주(鄭夢周)를 죽이고 나서 곧바로 시호를 내려 포장하는 은전을 베푸셨는데, 두 상신의 일은 정몽주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김종서·황보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정난의 거사를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종을 훈계함에 이르러서는, ‘나는 고난을 주었지만, 너는 태평을 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예종께서 대리(代理)청정하게 죄자 당시 연좌되었던 모든 사람을 다 석방하셨으니, 그렇다면 당시에도 대개 이 두 상신을 역적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고, 선조(先祖)에서도 또한 신원하자는 의논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 신원의 일은 중지되었지만 그 자손들을 녹용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니, 성의(聖意)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상께서 훈적(勳籍 : 훈신의 업적을 기록한 문서)을 가지고 의문을 품으십니다만, 광묘께서 정극(正極)하신 이후 공훈을 어찌 논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삼문(成三問) 등의 추복에 있어서도 또한 당시의 훈적에 대하여 혐의를 두지 않았는데, 유독 이 두 상신에게만 무슨 혐의를 둘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황보인의 묘가 파주에 있는데, 비석의 앞면에 ‘영천 황보공지묘(永川皇甫公之墓)’라고만 쓰여 있고 관작과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슬픈 일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결단코 시행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고 … 다른 여러 대신들도 다 같이옳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삼문 등 여러 사람들의 일은 광묘의 정위(正位) 이후에 있었으니 이는 바로 군상을 침범한 일이거니와, 두 사람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의 일은 매우 가벼운 데 속한다 하겠다. 그러나 다시 상량하여 보겠다” 하고는 … 중전교를 써서 황보인·김종서 등의 관작을 추복시켰다.

그러자 병조판서 원경하(元景夏)가 또 아뢰기를, “정분은 후사가 없어서 청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명(恩命)이 그에게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같이 죽은 세 사람은 일체로 신원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이에 정분의 관작도 함께 추복시키게 하였다.